# 안전한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을 위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2024. 12.



## 【일러 두기】

#### ◆ 발간 목적

- 본 모델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AI 모델·시스템 개발자 및 제공자 등은 개별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본 모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인「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향후 법·제도·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수 있습니다.

#### ◆ 주요 대상

- AI 기술을 도입, 적용하면서 프라이버시 관련 내부 관리체계를 마련, 정립, 정비하고자 하는 기업·기관 등을 주요 잠재 독자층으로 상정하였습니다.
- 본 모델은 AI 모델 사전학습 및 추가학습, AI 시스템 개발 및 제공 등 AI 전 주기를 망라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안내한 것으로, 향후 소규모 조직, 스타트업 등 세부대상과 영역에 특화된 안내자료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 문의처

- 내용 관련 문의 :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 02-2100-3073, 3078)
-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 전담 담당관 (☎ 02-2100-3045 / onestoppipc@korea.kr)

#### ※ 개인정보위「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란?

- ▶ 기업지원에 특화된 위원장 직속기구로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빠르고 안전하게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서비스
- ▶ 신청기업에 원칙적으로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답변을 제공하며, 추가 지원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방향에 대한 1차 답변 제공 후 분야별 검토 진행
  - \* △ 규제 샌드박스, △ 사전적정성 검토제, △ 개인정보 안심구역, △ 법령 적극 해석 등

# 목 차

I. 개요1
① 논의 배경 1
② 적용 범위
③ 개인정보 보호법 및 타 안내서 등과의 관계 5
Ⅱ.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의 절차······6
① AI의 유형·용례 파악 ······ 7
<b>② 용례에 대응하는 리스크의 식별 ······ 8</b>
③ <b>리스크의 측정 8</b>
4 리스크 경감방안의 검토와 도입 ······· 9
[붙임1] AI 리스크 관련 글로벌 논의 현황10 [붙임2] 지향되는 리스크 관리 체계의 원리12
[붙임3] AI 리스크 관리 관련 표준13
Ⅲ. 리스크의 식별14
<ul><li>Ⅲ. 리스크의 식별</li><li>Ⅱ 기획·개발 단계</li><li>Ⅱ 14</li></ul>
① 기획·개발 단계 ······ 14
① <b>기획·개발 단계 14</b> [붙임4] AI 학습데이터 수집·이용의 적법 근거 예시
1 기획·개발 단계 ···································
① 기획·개발 단계       14         [붙임4] AI 학습데이터 수집·이용의 적법 근거 예시       17         ② 서비스 제공 단계       20         Ⅳ. 리스크의 경감       26
① 기획·개발 단계       14         [붙임4] AI 학습데이터 수집·이용의 적법 근거 예시       17         ② 서비스 제공 단계       20         Ⅳ. 리스크의 경감       26         ① 관리적 조치       26
① 기획·개발 단계       14         [붙임4] AI 학습데이터 수집·이용의 적법 근거 예시       17         ② 서비스 제공 단계       20         Ⅳ. 리스크의 경감       26         ① 관리적 조치       26         ② 기술적 조치       31
① 기획·개발 단계       14         [붙임4] AI 학습데이터 수집·이용의 적법 근거 예시       17         ② 서비스 제공 단계       20         Ⅳ. 리스크의 경감       26         ① 관리적 조치       26         ② 기술적 조치       31         V.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체계       36

## I. 개요

## 1 논의 배경

## 1.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관계

- □ 인공지능(AI)의 발전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기초 하고 있어 AI와 프라이버시 리스크는 불가분의 관계임
  - AI 기술이 요구하는 데이터 처리방식의 근본적 변화는 개인정보 유·노출 등 전형적인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기존 정보처리 환경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유발
  - AI 기술발전과 함께 복잡한 변화양상을 보이는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적정 관리·완화는 지속가능한 AI 발전의 선결요건

#### 【 AI 시대 데이터 처리방식의 변화 】







#### 참고 AI 기술이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sup>1)</sup>

-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전형적인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확대·악화
  - ► AI 학습에 필요한 개인정보 규모와 범위의 증대로 적법근거 없는 무분별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추적·감시 리스크 악화
  - ▶ AI 데이터 처리의 복잡한 가치망으로 인해 보안상 취약점 확대
- AI 기술이 새로운 유형의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유발
  - 개인에 대한 사소하거나 식별성 없는 파편화된 정보를 연결 →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행동·의도 예측(예: 범죄발생 위험 예측)
  - → 개인에 대한 물리적 속성(예: 안면사진)으로부터 개인의 성격, 감정 추론
  - → AI가 암기한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노출할 위험(예: 이름, 집주소 등)
  - ▶ 개인의 신원을 도용하여 가짜 이미지·오디오 등을 생성

<sup>1)</sup> Haoping Lee et al., *Deepfakes, Phrenology, Surveillance, and More! A Taxonomy of AI Privacy Risks*, CHI '24, 1-9 (2024).

## 2. 리스크 기반 접근의 필요성

- □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AI 기술 발전을 선험적,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AI** 개발과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
- □ 불확실성이 높은 AI영역에서 '리스크 기반 접근'을 통해 AI의 부정적 영향을 관리·완화하면서 AI 기술의 이점을 극대화할 필요

#### 3. 목적과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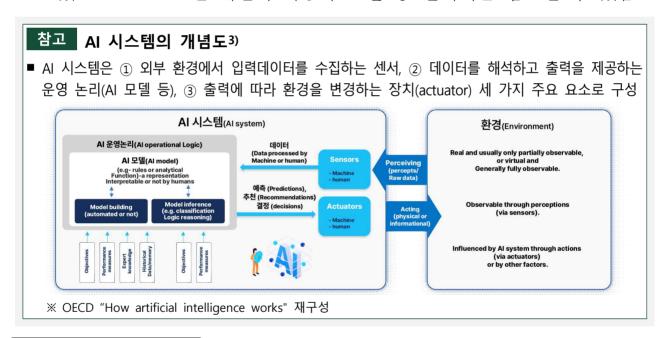
- □ 본 모델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 경쟁력인 AI가 프라이버시 친화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요인을 체계화하고, 리스크 관리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현 시점에서 학계·정부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AI 데이터 처리 특성, 리스크 유형, 국제적 상호운용성 등을 고려해 마련되었음
  - 본 모델의 준수는 자율 사항으로서, AI 기업 등은 개별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음
- □ 또한 본 모델은 AI 기업·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 기업·기관 등이 본 모델에 적시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사실을 인정하거나 행정제재 시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음
- □ 다만,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는 전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어 본 모델은 향후 기술, 정책, 표준 발전 등에 따라 수정·보완될 예정임

#### -- 【 안내서 적용 방안 예시 】 <del>-----</del>

- AI 모델·시스템 개발 및 제공자는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개인정보 영향평가 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검토항목 등에 본 모델의 내용을 추가 반영하거나,
  - 동 안내서를 참고하여 별개의 독립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 또한, **PbD(Privacy by Design) 관점**에서 AI 시스템의 **초기 구상단계**부터 본 모델의 내용을 **기획에 참고**할 수 있음
- ▶ 정부·연구기관 등이 AI 시스템의 위험 관리와 관련한 정책 등을 수립할 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본 모델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음

# 2 적용 범위

- □ (적용 대상) AI 모델·시스템 개발자 및 제공자 등
  - (모델·시스템<sup>2</sup>) AI 시스템은 AI 모델을 포함하여 데이터 수집·저장· 전송·접근관리 등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는 여러 구성요소를 포괄
    - AI 모델은 특성값(feature) 간의 상관관계를 표상하는 파라미터(parameter)의 집합으로서, 그 자체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는 일부 견해도 있으나,
    - 파라미터 값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추론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AI 모델이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AI 시스템의 일부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AI 모델 개발자·제공자 또한 동 안내서를 참고할 수 있음



2) 최근 AI 모델과 AI 시스템을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 여부 및 프라이버시 리스크 수준을 달리보는 견해가 존재하며, 이와 관련한 글로벌 논의가 지속될 전망.



- \*\* (독일 함부르크 개인정보 감독기관(HmbBfDI) 의견서('24.7.15.)) LLM에는 개인정보가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LLM을 단순히 저장하는 것은 GDPR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지 않음. 단, LLM 등으로 구성된 AI 시스템이 쿼리나 출력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한, 그 처리는 GDPR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 \*\* (미국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법(CCPA) 개정안(AB-1008)('25.1.1. 시행))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암기 및 유·노출 위험을 전제, 개인정보가 존재할 수 있는 '추상적 디지털 포맷'에 '개인정보를 출력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포함
- \*\* (연구 동향)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데이터를 손실 없이 압축·복원하는 고성능 무손실 압축기(lossless compressor)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존재(Grégoire Delétang, Anian Ruoss, Paul-Ambroise Duquenne, Elliot Catt, Tim Genewein, Christopher Mattern, Jordi Grau-Moya, Li Kevin Wenliang, Matthew Aitchison, Laurent Orseau, et al. Language modeling is compression. arXiv preprint arXiv:2309.10668v2, 2024.)
- 3) OECD, "How artificial intelligence works", https://oecd.ai/en/inside-artificial-intelligence

- (개발자4) AI 모델·시스템 개발자는 모델 아키텍처 및 매개변수 설정 등 AI 데이터 처리\*의 목적, 범위, 수단 등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 개발 이후 다운스트림(downstream)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견가능한 리스크를 예측·통제할 일정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본 모델을 참고
  - \* AI 모델을 사전 학습(pretrain)하기 위한 대규모 학습데이터 투입뿐만 아니라, <sup>(1)</sup> AI 모델 미세조정, 도메인 적응적 학습(DAL) 등 추가학습, <sup>(2)</sup> 퓨샷러닝 등 문맥 내 학습(in-context learning), <sup>(3)</sup> 인적 정렬(alignment), <sup>(4)</sup> 검색증강생성(RAG) 과정에서 추가 투입된 데이터 처리 포함
- (제공자) AI 모델·시스템 제공자는 개발 완료된 AI가 쿼리(query) 등을 통해 최종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면서,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추론 등을 출력하는 단계의 리스크를 예측·통제할 일정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본 모델을 참고
- □ (리스크의 범위) AI 모델·시스템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 중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국내외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리스크를 상정
  - 문헌조사, 기업 인터뷰 등을 통해 파악한 AI 기술의 고유한 특성, 기능 및 데이터 요구사항 등으로 인해 새롭게 나타나거나 심화되는 정보 주체 권리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리스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룸
    - ※ (예) ▲ 생성 AI의 합성콘텐츠 → **딥페이크**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 새로운 위협 유발 ▲ AI의 자동화 특성, 대규모 데이터를 연결하는 능력 → 대중감시, 프로파일링 위협 증폭 ▲ AI 학습에 요구되는 대규모 데이터 →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성 확대
  - 다만, 본 모델에서 제시된 리스크라는 사실이 모든 AI 모델 및 시스템에 대해 보편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리스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sup>4)</sup> 본 모델에서 '개발자'는 AI 모델 또는 시스템을 기획, 설계, 학습 및 테스트, 조정 등을 통해 구축하는 자를 의미하며, '제공자'는 AI 모델 또는 AI 시스템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시장에 출시하여 배포하는 자를 의미.

다만, AI 가치망 참여자에 대한 분류체계, 정의 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영역에서는 AI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임

<sup>\*\* (</sup>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자('인공지능 사업자')를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분류

<sup>\* (</sup>EU AI ACT) 공급자(provider), 배포자(deployer) 등으로 분류

<sup>\*\* (</sup>NIST AI RMF) AI 설계(design) 행위자, 개발(development) 행위자, 배포(deployment) 행위자 등으로 분류

<sup>\*\* (</sup>ISO/IEC 42001) AI 제공자(provider), AI 생산자(producer) 등으로 분류

- ★ '리스크'의 정의: 피해(harm)의 발생 확률(probability of occurring) 및 규모 (magnitude)에 있어서의 불확실성(uncertainty)
- ※ (NIST RMF 1.0) 리스크를 "한 사건의 발생 확률과 해당 사건의 결과의 규모 및 정도의 복합적 측도 (composite measure of an event's probability of occurring and the magnitude or degree of the consequences of the corresponding event)"로 정의
- ※ (EU AI ACT) 리스크를 "위해의 발생 확률과 강도의 결합(combination of the probability of an occurrence of harm and the severity of that harm)"으로 정의

# 3 「개인정보 보호법」 및 타 안내서 등과의 관계

#### □ 안전조치의무와의 관계 (法제29조)

- 전통적인 개인정보파일을 전제로 하는 안전조치의무 조항을 AI 모델·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동 조항의 취지·목적을 참고하여 AI 환경에 적합한 안전조치를 마련·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예) 본 모델의 제4장(리스크의 경감)을 참고한 안전조치를 법 제29조에 따른 내부관리 계획에 포함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등

## □ 개인정보 영향평가와의 관계 (法제3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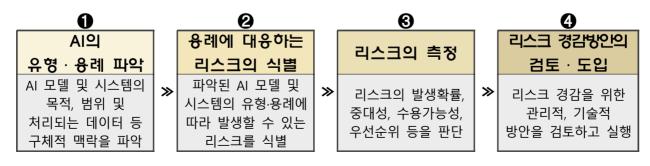
- **공공기관**의 AI 시스템 구축·운영이 **영향평가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外 본 모델을 보충적으로 참고할 수 있음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영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공공기관
-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등은 AI 모델·시스템 개발 및 제공시 본 모델을 참고한 영향평가 수행을 자율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 의무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 1차 조정 금액의 최대 30%를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시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 제2항, 2023.9.15. 제정)

## □ 타 안내서와의 관계

- 본 모델은 개인정보위의 **타 안내서**(가이드라인, 정책방향 등)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개별 안내서 참고** 필요
- 본 모델은 개인정보위의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21.5.31.)'를 **대체**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3.2월) 사항 등 반영

## Ⅱ.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의 절차

- □ 오늘날 AI는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매우 다양한 맥락, 목적으로 활용되는 범용 기술이며, 용례에 따라 데이터 요구사항(종류, 형태, 규모 등), 처리방식(알고리즘 유형 등)이 상이
  - 따라서 AI의 구체적 유형과 용례를 파악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범위, 프라이버시 리스크 성격을 결정짓는 출발점
  -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리스크를 식별·측정하고 리스크에 비례하는 안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구현할 수 있음
- □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의 조기 발견 및 완화**를 위해 AI 모델·시스템의 기획·개발 단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 이후에도 AI 시스템의 기능 및 기술의 보강이 지속될 수 있고, 의도 하지 않은 용례로 사용되거나 침해 환경이 악화되는 등 외부 요인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반복적 위험 관리가 권장됨
- □ 리스크 관리 절차는 세부적으로 다양할 수 있으나 <sup>1</sup> AI의 유형·용례 파악, <sup>2</sup> 리스크 식별(mapping), <sup>6</sup>리스크 측정(measuring), <sup>4</sup> 경감방안의 검토·도입(mitigation)으로 이어지는 4단계 절차가 권장됨
  - 이와 같은 절차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5** 및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 (risk-based approach)의 토대에서 구현되며,
  - 국제적 논의 중인 AI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표준\*의 접근방식과 유사 \* NIST AI Risk Management Framework(AI RMF 1.0), ISO/IEC 42001:2023 등



<sup>5) [</sup>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 원칙(法제3조)] ① 목적 적합성, ② 적법처리, ③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④ 투명성, ⑤ 안전 관리, ⑥ 정보주체 권리보장, ⑦ 사생활 침해 최소화

# 1 AI의 유형·용례 파악

-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은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
- 한편, AI의 프라이버시 리스크는 AI 모델·시스템의 목적, 범위 및 처리 되는 데이터 등 구체적 맥락에 따라 달라짐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 下 맥락특유적 리스크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개발·제공하고자 하는 AI의 유형·용례 파악이 선행될 필요
- AI 프라이버시 리스크는 크게 AI 생애주기(life-cycle) 및 서비스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학습데이터가 수집·이용되는 기획·개발 단계, 학습이 완료된 AI와 실제 이용자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제공 단계 등 AI의 생애주기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음
  - 실제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도 범용성이 높은 생성 AI 시스템, 특정 문제해결에 특화된 판별 AI 시스템 등 AI의 의도된 목적, 용례에 따라 리스크 유형이 상이

#### 【AI 유형·용례 분류 예시】

구분	개념
	■ (프로젝트 기획) 모델·시스템의 범위 및 용례 등 AI의 목적을 정의하고,
기획·개발	필요한 데이터 및 오픈소스 사용 여부 등을 결정
	■ (데이터 수집·전처리) AI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습데이터를 수집하고, 특징 선택, 특징 추출, 데이터 통합 등의 전처리 수행
	■ (모델 학습) 데이터를 투입하여 패턴, 구조, 배열 등 상관관계를 학습 ※ 데이터의 추가 투입에 의한 미세조정, 도메인 적응적 학습 등 추가 학습, 개발 과정에서의 퓨샷러닝 등 맥락 내 학습, 인적 정렬, 검색증강생성(RAG) 등 포함
	■ (생성 AI) 이용자의 입력값과 문맥 등을 활용하여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생성하는 시스템
	■ (판별 AI) 이용자의 입력값을 특정 클래스로 분류하거나 점수를 매김하여
111114	예측하는 시스템
서비스	▶ 사람의 평가 및 분류를 수행하는 시스템
제공	※ 채용AI, 신용평가AI, 랭킹, 사기탐지시스템(FDS), 형사사법AI 등
	│  │ ▶ 추천 시스템
	※ AI 기반 개인맞춤형 광고/추천 등
	│  │ ▶ 사실의 인지를 수행하는 시스템
	※ 의료보조AI, 자율주행차 센서, 생체인식정보 인지AI 등

# 2 용례에 대응하는 리스크의 식별(mapping)

- 식별한 AI 유형과 용례에 대응하는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식별
- 이하 예시에 포함된 AI의 일반 리스크와 프라이버시 리스크는 AI 생애주기 및 용례별 리스크로서 대표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모든 리스크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율적으로 참고

#### 【리스크 맵핑 방안 예시】

	구분		일반 리스크	프라이버시 리스크
기획·개발		개발	■ 권리 침해 (저작권, 개인정보, DB권)	■ 적법하지 않은 학습데이터 수집·이용 ■ AI 학습데이터의 부적절한 보관·관리 ■ AI 가치망의 다양화에 따른 데이터흐름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 책임 복잡화
서비스	생성 AI 서비스		■ AI 합성콘텐츠 오용 ■ 권리 침해 ■ 안보, 보안 문제	■ 학습데이터 암기 및 개인정보 유·노출 ※ 판별 AI의 리스크에도 해당  ■ 악의적 AI 합성콘텐츠로 인한 정보 주체 권리 침해 (정보주체 의사에 반하는 생체정보 이용 등)
제공	판별	사람의 평가/분류	<ul><li>■ 편향, 차별, 품질 편차</li><li>■ 불투명성</li></ul>	■ 자동화된 결정으로 인한 정보주체 권리 약화
	Al	추천 시스템 사실의 인지	<ul><li>■ 프로파일링 정치적 양극화</li><li>■ 편향, 품질 편차</li></ul>	■ 대중감시 및 민감정보 추론 위협

# 리스크의 측정(measuring)

3

○ 기업·기관은 **적절한 지표 및 측정 도구를 활용**<sup>9</sup>하여 △ 리스크의 **발생** 확률, △ 리스크가 실현되었을 때 조직·개인·사회에 미치는 결과의 중대성 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고, △ 리스크의 수용 가능 여부, △ 우선순위 등을 파다

<sup>6)</sup> 현재 AI 안전성 측정 도구·지표 개발은 전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이며, 특히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련 지표 개발은 더욱 초기 수준임. 다만, 국제기구 및 AI 안전연구소 등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AI 안전성 평가 도구, 방법론을 참고할 수 있음

<sup>■ &</sup>quot;Dioptra" (https://pages.nist.gov/dioptra/) - 미국 NIST는 AI 행정명령(E.O.14110)에 따라 AI 소프트웨어 평가 플랫폼 개발 공개

<sup>• &</sup>quot;Catalogue of Tools & Metrics for Trustworthy AI" (https://oecd.ai/en/catalogue/overview)

<sup>-</sup> OECD는 AI의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 등의 정성적, 정량적 측정 도구/지표 카탈로그 제공 중

<sup>■ &</sup>quot;An open-source framework for large language model evaluations" (https://inspect.ai-safety-institute.org.uk)
- 영국 AI안전연구소(UK AI Safety Institute)가 개발하여 오픈소스로 공개한 AI 안전성 평가 플랫폼. 핵심지식, 추론 능력 및 자율기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모델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sup>• &</sup>quot;Guide to Red Teaming Methodology on Al Safety" (https://aisi.go.jp/assets/pdf/ai\_safety\_RT\_v1.00\_en.pdf)

<sup>-</sup> 일본 AI안전연구소(Japan AI Safety Institute)는 AI 시스템 개발자 및 제공자가 공격자의 관점에서 AI 안전을 평가하기 위한 레드팀 방법론을 발표

- 리스크 수용 가능 여부,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규제현황, 사용되는 데이터의 민감성, 조직의 목표·문화· 자원 등 경영 환경, 기술 환경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4 리스크 경감방안의 검토와 도입(mitigation)

- 리스크의 식별·측정 결과에 따라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방안을 검토하고 도입
  - 관리적 조치의 경우 식별된 위험의 주기적인 측정 및 모니터링, 결과의 문서화, 위험 관리를 위한 담당 조직 구성·운영, 조직 내· 외부 피드백 수렴·반영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기술적 조치의 경우 다양한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PET)의 도입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하지 않음

####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정책연구 사례 [부록]

- ◈ 개인정보위는 한국어 거대언어모델(LLM)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라이버시 리스크 경감기술의 유형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음
  - ※ (연구명) '생성형 AI 관련 프라이버시 리스크 경감기술 평가연구', (연구기간) '24.5.~'24.10. (연구기관) (주)제이씨레이다, 경북대학교
- (연구 내용) 한국어 LLM 모델 4종에 대해 중복제거(de-duplication), 입출력 필터링, 섭동 (perturbation), 가지치기(pruning) 기술을 적용하고 적용 전후 개인정보 암기·재현 정도를 비교
- <mark>(주요 결과) 한국어 언어모델</mark>에 대해서도 중복제거, 입력·출력 필터링, 섭동, 가지치기 등의 경감 기술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
- 다만, 경감 기술 적용에도 **완전한 암기 리스크 제거**는 어려우므로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위한 **추가적 안전조치**가 필요하며, **경감기술 적용**과 Al **모델의 성능** 사이에 **유의미한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함을 확인
- (의의 및 한계) 선행연구가 부족한 한국어 LLM 모델 대상 프라이버시 경감기술의 효과성을 실증함으로써 과학에 기반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정책·제도 토대 마련
- 다만, 한정된 컴퓨팅 자원(GPU)·예산·기간 등으로 실험조건 및 연구범위가 제약된 한계 → 본 연구결과의 일반적 적용에 한계가 있고, 후속 연구를 통한 보완 필요

## 붙임1 AI 리스크 관련 글로벌 논의 현황

-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AI 안전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AI 리스크의 체계적 분류와 과학적 평가에 대한 전세계 논의 활발
  - **프라이버시 리스크**는 글로벌 격차 심화, 저작권 침해, 일자리 대체 등과 함께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 유형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음
- □ **AI 안전성 정상회의**(1차 '23.11. 블레츨리, 2차 '24.5. 서울)
  - 주요국 정상은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통해 AI의 위험 관리, 인류와 AI의 공존을 위한 AI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에 기여
    - ※ (참가국 및 조직) 대한민국,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 28개국, EU, UN, 구글 딥마인드, 메타, 오픈AI 등 기업대표 등
    - 신뢰 기반 AI 개발·사용, 위험 식별 등 AI 안전성 확보(1차회의), AI 안전·혁신·포용 향상(2차회의)에 대한 선언 발표
    - 또한, '첨단 AI의 안전성에 관한 국제 과학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 하여 개인정보보호 위험 등 범용 AI의 잠재적 위험을 분류
    - \* International Scientific Report on the Safety of Advanced AI('24. 5. interim report)

## 【범용 AI 위험 분류】

리스크 분류	주요 위험
악의적인 사용 위험	■ <u>가짜 콘텐츠로 인한 개인 피해*</u> , 허위 정보 및 여론조작, 사이버 범죄, 이중 사용 과학 위험 * 피싱 공격, 딥페이크 등 개인의 동의 없는 가짜·유해 콘텐츠 생성
오작동으로 인한 위험	■ 제품기능 문제로 인한 위험, 편향성(편견과 과소 대표로 인한 위험), 통제력 상실
시스템적 위험	■ 노동시장 리스크, 글로벌 AI 격차, 시장 집중 위험 및 단일 장애 지점, 환경에 대한 위험, <b>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위험*</b> , 저작권 침해 * 적대적인 입력 사용시, 모델에서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학습 데이터 추출 가능 - 민감한 개인 정보(건강, 금융 등)로 학습된 모델의 경우,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 - 민감한 데이터를 효과적·효율적으로 검색하여 개인정보를 유추, 남용할 가능성
교차 위험 요소	■ 기술적 위험 요소의 교차 차단, <u>사회적 위험 요소의 교차 차단*</u> * 기술 발전 속도와 규제 대응 속도 사이의 불균형 등

## □ G7 히로시마 프로세스

- G7 정상회의('23.5.)에서 AI 기술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국제규범을 구체화하기 위해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수립에 합의
  - ※ (참가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EU
  - 의장국(일본)이 G7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23.9.) G7 회원국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생성AI의 주요 위험으로 인식

#### 【설문조사 주요 결과】

조사 항목	순위 결과
생성형 AI의	① 허위정보 및 조작, ② 지적재산권 침해, ③ <u>프라이버시 침해</u> ,
주요 위험	④ 편향성 및 차별성 악화, ⑤ 안전성 위협, ⑥ 사이버보안 위협
생성형 AI에 관한	① 책임있는 기술 사용, ② 허위 조작정보 해결, ③ 거버넌스,
시급성, 중요도에 따른	④ 투명성 촉진, ⑤ 지식재산권 보호
원칙 우선순위	※ (기타 시급성) <u>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거버넌스</u> , 인권 및 기본권 등

- AI 시스템 개발 위험 관리를 위한 개발자 행동 강령\* 발표('23.10.)
- \* AI 생애주기 위험 관리, 투명성·책임성 강화, <u>개인정보 보호정책을 포함한 위험</u> 관리 정책 개발, 개인데이터 및 지적 재산 보호 등 11개 조치 포함

## □ ML 커먼스(MLCommons) AI 안전 벤치마크

- 민간 컨소시엄인 ML 커먼스\*는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안전성 테스트를 위한 벤치마크인 'AILuminate'\*\*를 개발
  - \* (ML 커먼스) AI 기술의 신뢰성, 안전성, 효율성 구축을 위해 업계 및 학계 연구자, 엔지니어, 실무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23년~), 구글, 메타, NVIDIA, 삼성 전자, 네이버, 퓨리오사AI 등이 회원으로 참여
  - \*\* (AlLuminate) 12가지 위험범주에 걸친 24,000개 이상의 테스트 프롬프트에 대한 LLM의 응답을 기반으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벤치마크('24.12월 V.1.0 발표)
  - AI 안전 벤치마크 마련을 위해 AI의 위험범주(hazard categories)를 12개로 분류했으며, 그 중 하나로 프라이버시를 포함

① 아동 성 착취	② 무차별 무기(CBRNE)	③ 성관련 범죄	④ 자살 및 자해
⑤ 폭력 범죄	⑥ 명예훼손	⑦ 증오	⑧ 비폭력 범죄
⑨ 지적재산권	10) <u>프라이버시</u>	⑪ 성적 콘텐츠	⑫ 전문 조언

# 붙임2 지향되는 리스크 관리 체계의 원리

<b>\rightarrow</b>	본 모델을 참고하여	리스크 관리 체계	∥를 수립 및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b>다음</b> 원	<b>!리를 고려</b> 하는 것	이 <b>권장됨</b>		

## □ <mark>맥락 특유적 접근</mark>(context-specific approach)

- 개별 AI의 용례와 유형에 따라 개별 맥락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식별· 평가하여 대응하는 맞춤형·핀셋형 접근을 지향
  - ※ 개별 AI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 통제를 가하는 방식 지양

## □ <mark>일관성</mark>(coherent)

○ 다만, 일관되고 정연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AI의 용례들을 처리 단계 및 사람과의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 유형화

## □ 비례성(proportional), 점진성(granular)

○ 리스크 관리를 위한 통제 강도는 평가된 리스크 수준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상향되도록 설정

## □ 원칙기반 접근(principle-based approach)

○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고려하여 개별 기술에 대해 과도하게 세세하게 정하기보다는 원칙 중심으로 관리하여 기술 중립성을 견지

## □ <mark>측정가능성</mark>(measurable), <mark>비교가능성</mark>(commensurable)

○ 원칙기반 접근을 하더라도 AI 개발·서비스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리스크의 측정 및 경감수단을 명확히 마련

## □ <mark>이해관계자의 참여</mark>(stakeholder participation)

○ 특히 AI의 활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정보주체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용

## □ <mark>상호운용성</mark>(interoperability)

○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 다양성, 포용성을 담아내는 범위 내에서 국제표준 등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

# 붙임3 AI 리스크 관리 관련 표준

# □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 AI RMF 1.0 (2023)

○ 4단계(거버넌스, 맵핑, 측정, 관리)의 표준적인 AI 리스크 관리체계 제시

단계	주요 내용
l. 거버넌스 (Govern)	①조직 내 AI 리스크의 맵핑·측정·관리 정책·절차·실무의 마련, 투명한 공개, 효과적 시행②적절한 부서·개인들에게 AI 리스크의 맵핑·측정·관리의 권한·책임을 부여하고 교육을 시행하여 책임구조를 마련③생애주기에 걸친 AI 리스크의 맵핑·측정·관리에 있어 인력의 다양·형평·포용·접근성 절차를 우선 고려④인사 부서는 AI 리스크를 고려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문화에 헌신⑤관련 AI 주체들과의 견고한 협력을 위한 절차 마련⑥제3자 소프트웨어, 데이터, 기타 가치망 문제에서 발생하는 AI 리스크/편익에 다응하는 정책·절차 마련
II. 맵핑 (Map)	① 맥락(context)을 설정·이해 ② AI 시스템의 범주화 이행 ③ AI의 역량, 타겟팅된 사용, 목표, 예상 편익·비용을 적절한 벤치마크(benchmark)와 비교하여 이해 ④ 제3자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AI 시스템 구성 요소의 리스크·편익을 맵핑 ⑤ 개인·그룹·커뮤니티·조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특성화
III. 측정 (Measure)	① 적절한 방법과 측정지표를 식별·적용 ② AI 시스템의 신뢰성을 평가 ③ 식별된 AI 리스크를 시간 경과에 따라 추적하는 메커니즘 마련 ④ 측정의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평가
IV. 관리 (Manage)	① 맵핑·측정 기능의 평가 및 기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AI 리스크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대응·관리 ② 관련 AI 주체들로부터의 입력을 통해 AI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계획·준비·시행·문서화 ③ 제3자 기관으로부터의 AI 리스크와 편익을 관리 ④ 식별·측정된 AI 리스크에 대한 응답·복구·소통계획을 포함한 리스크 처리를 문서화, 정기 모니터링

# □ ISO/IEC 42001:2023-정보기술-AI-관리시스템

○ AI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

관리시스템	주요 내용
조직의 맥락	■ 조직과 그 맥락의 이해, 이해관계자의 필요와 기대의 이해, AI 관리시스템의 범위의 결정, AI 관리 시스템
리더십	■ 리더십과 전념, Al 정책, 역할·책임·권한
계획	■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한 조치들(AI 리스크 평가, AI 리스크 처치, AI 시스템 영향평가), AI 관련 목표와 이들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변화의 계획
지원	■ 리소스, 역량, 인식, 소통, 정보의 문서화
운용	■ 운용계획 및 관리, AI 리스크 평가, AI 리스크 처치, AI 시스템 영향평가
성능평가	■ 모니터링/측정/분석/평가, 내부감사, 경영 검토
개선	■ 지속적 개선, 부적합성과 시정조치

# Ⅲ. 리스크의 식별

# 1 기획·개발 단계

## 1 개요

- □ AI 시스템 기획·개발 단계는 AI 시스템의 구체적인 목적 설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기준 마련, 사용할 AI 모델 및 시스템 구성 방안 설정, 모델 학습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 O PbD(Privacy by Design)\* 원칙을 기반으로 AI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친 리스크 관리체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단계임
    - \* Privacy by Design: 제품·서비스 개발 시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기술·정책을 설계에 반영하는 원리

#### 【기획·개발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

구분	주요내용	
예측 시스템	► (목적) 미래 결과 예측(예: 주가 예측, 수요 예측 등) ►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 (모델 아키텍처) 회귀분석, 순환신경망(RNN), 트랜스포머 등 ► (프라이버시 리스크) 이용자 소비성향 등 행동패턴 노출 위험	
분류 시스템	<ul> <li>▶ (목적) 주어진 데이터를 특정 범주로 분류(예: 스팸 필터링, 질병진단, 이미지 분류 등)</li> <li>▶ (데이터) 라벨이 있는 데이터셋(예: 이메일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 등)</li> <li>▶ (모델 아키텍처) 로지스틱 회귀, 의사결정 나무, 합성곱 신경망 등</li> <li>▶ (프라이버시 리스크) 분류의 기초가 되는 개인 이메일:건강기록 등 민감정보 유노출</li> </ul>	
추천 시스템	<ul> <li>▶ (목적) 이용자의 취향에 맞는 항목 추천(예: 영화, 음악, 쇼핑 추천 등)</li> <li>▶ (데이터) 이용자 프로필 데이터, 과거 대화 이력 데이터 등</li> <li>▶ (모델 아키텍처) 컨텐츠 기반 필터링, 강화학습을 활용한 추천 모델 등</li> <li>▶ (프라이버시 리스크) 맞춤형 추천 과정에서의 민감정보 프로파일링 우려</li> </ul>	
자연어 시스템	► (목적) 텍스트 데이터 이해 및 생성(예: 채팅봇, 번역기, 감정분석 등) ►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예: 채팅 기록, 뉴스 기사, 리뷰 데이터 등) ► (모델 아키텍처) 트랜스포머 기반의 BERT, GPT 모델 등 ► (프라이버시 리스크) 민감정보의 노출, 감정 예측 과정에서의 심리상태 노출	
컴퓨터 비전 시스템	► (목적) 이미지 또는 영상데이터 이해 및 분석(예: 얼굴 인식, 자율주행 등) ► (데이터) 이미지, 영상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 (모델 아키텍처) CNN, R-CNN,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 등 ► (프라이버시 리스크) 안면인식 통한 식별, 감시 위험	

□ AI 모델은 AI 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컴퓨터가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의 패턴, 구조, 배열 등 통계적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AI 학습 과정을 통해 개발 7)

- **학습데이터**는 AI 모델·시스템의 의도된 목적 등에 따라 공개된 데이터, 이용자 데이터, 제3자 제공 데이터, 자체 생성 데이터 등으로 구성되며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큼
- □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토큰화, 임베딩** 등 압축·변환 과정에서 일종의 집합화(aggregation)가 이루어져 **개인 식별성이 낮아지는 특성이** 있음
  - 또한, AI 시스템은 반드시 AI 모델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입력·출력 처리 시스템, 기타 요소(검색 증강 생성\* 등) 등 여러 구성요소를 통해 개발·운영됨
    - \*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 생성 모델과 검색엔진을 통합하여 사용자 질의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를 프롬프트 보강에 활용해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
  - 따라서 AI 시스템이 배포되어 데이터 입력·출력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AI 모델 개발 자체로 리스크가 현실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다만, 학습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학습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은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므로 AI 모델·시스템 개발자는 모델 학습 단계의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
- □ 한편, AI 학습에 막대한 컴퓨팅 및 데이터 자원이 요구됨에 따라 **자체** 개발 AI 모델 대신 오픈소스, API 8) 형태의 타사 AI 모델 활용 활발
  - 이는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이전, 목적 外 이용, 안전성 미흡**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자간 책임분배 등을 **사전 검토할 필요**

<sup>7)</sup> 범용 AI 모델은 주로 자기지도학습(self-supervised learning) 방식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로 사전훈련된 모델로서, 미세조정(fine-tuning), 도메인 적응 훈련(domain adaptive learning; DAL) 등 추가적 학습을 거쳐 다양한 하류 작업을 위해 적응됨. 특정 작업을 위한 AI 모델의 학습은 전통적인 지도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학습 방식으로 훈련됨.

<sup>■</sup>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AI가 레이블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방법으로, AI 응용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됨

<sup>■</sup>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 AI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방법으로, 복잡하고 대량의 데이터에서 숨겨진 패턴·구조 등을 찾는데 유용함

<sup>■</sup> **자기지도학습(self-supervised learning):** AI가 데이터간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레이블을 스스로 획득해 학습하는 방식으로서, 데이터의 특정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부터 예측 또는 복구하는 작업에 유용

<sup>■</sup>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AI가 주어진 환경에서 행동을 선택하고 그 결과로서 '보상'이나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AI가 더 나은 행동을 선택하도록 유도

<sup>8)</sup> Open Source: 소스코드가 플랫폼(AI 분야의 허깅페이스 등)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다만,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비용 절감, 투명성, 개발자 커뮤니티에 의한 지속적 수정 등 장점이 있으나,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어 소스코드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문제 발생 시 공식적 기술 지원이 부족할 수 있음.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정의된 인터페이스. 소스코드는 공개되지 않으나, API 호출을 통해 특정 서비스 또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개발 효율성 향상, API 제공사의 지속적 유지보수 등 장점이 있으나, 서비스 개발 비용(유료의 경우), 외부 종속성 등이 증가할 수 있음.

## 2 리스크 유형

## ■ 적법하지 않은 학습데이터 수집·이용

- **학습데이터의 규모는 모델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AI 기술의 발전·확산은 대규모 개인정보 수집·이용 필요성을 확대
  - 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적법성 확보(法제15조, 제17조, 제18조 등) 등 기업의 법준수 리스크를 확대하고, 목적 명확성, 최소수집 원칙, 사생활 침해 최소화,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 구현을 어렵게 함
- AI 학습데이터는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 ▲旣 보유한 데이터를 AI 학습 목적으로 재사용하는 방안, ▲동의·계약 등에 기반하여 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방안, ▲협력사 등 제3자에게 제공받는 방안 등 다양한 형태로 수집·이용되고 있음
  - 한편, AI 학습데이터의 규모, 종류, 주된 수집 출처 등은 AI 모델의 개발 단계, 학습 목적에 따라 상이
  - ※ (예) ▲ 거대언어모형(LLM) 등 기반모델 성격의 모델 개발 → 대규모 학습데이터가 요구되므로 웹스크래핑 데이터 등을 활용, ▲ LLM의 미세조정 → 목적에 따라 비교적 소규모학습데이터가 요구되므로 직접 구축한 데이터 등 활용
- AI 모델·시스템 개발자는 **학습데이터 수집 출처별**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적법성**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고, 정보주체에게 필요한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 <sup>(1)</sup> AI 모델 미세조정, 도메인 적응적 학습(DAL) 등 추가학습, <sup>(2)</sup> 개발 과정에서의 퓨샷러닝 등 문맥 내 학습(in-context learning), <sup>(3)</sup> 인적 정렬(alignment), <sup>(4)</sup> 검색증강생성(RAG) 등을 거쳐 모델을 사용하고자 하는 AI 시스템 개발자는 추가 투입한 데이터에 대하여 적법성 확인
  -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신용카드정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별도 검토 필요(法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34조의2 등)
  - ※ 학습데이터 수집 출처에 따라 상기 데이터가 포함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학습단계에서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 (^ 개인식별정보 제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제공하는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URL)'에 대한 웹크롤링 배제 등)

## 붙임4 AI 학습데이터 수집·이용의 적법 근거 예시

● 대표적으로 AI 학습 수요가 높은 공개된 개인정보, 이용자 데이터의 AI 학습목적 수집·이용 적법성은 다음의 예시를 참고할 수 있음

#### □ 웹스크래핑 데이터 등 공개된 개인정보

- **공개된 개인정보**는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로서, 주로 AI 학습을 위해 **웹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출처에서 **수집한 데이터셋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를 의미
  - 정보주체 스스로 공개한 개인정보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법령에 의해 공시·공개된 개인정보, 출판물, 방송매체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포함
- (적법근거) AI 개발의 구체적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u>정당한 이익</u> 조항(法제15조제1항제6호)이 실질적인 적법근거가 될 수 있음
  - ※ 구체적 내용은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24.7.) 참고
  -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 목적의 정당성, △ 처리의 필요성, △ 구체적 이익형량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제6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요건	주요 내용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의 존재		
목적의	-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를 통해 개발하려는 AI의 목적·용도를 구체화		
정당성	하여 정당한 이익을 명확화		
	※ (예) 의료진단보조, 신용평가, 텍스트 생성·분류·번역 등을 수행하는 LLM 등		
처리의	■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필요성과 상당성·합리성이 인정될 것		
필요성	※ (예) 의료진단보조 AI 개발시 개인의 소득·재산 등 관련없는 정보는 학습 배제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 권리에 명백히 우선		
구체적	- '명백성' 요건 충족을 위해 (i) 정보주체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이익형량	안전성 확보조치 및 (ii)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 마련·시행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 이익이 우선하도록 조치		

## □ 이용자 개인정보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적법하게 수집된 계정정보(ID, 연락처 등), 이용자 콘텐츠(개인정보 포함 입력 프롬프트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행태정보 등 이용자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적법근거를 갖출 경우 활용 가능
  - 특히 AI 환경에서는 기존 AI 서비스의 개선, 신규 AI 서비스 개발 등다양한 목적의 이용자 개인정보 활용 수요 존재
- (적법근거) 기업·기관 등은 당초 수집한 목적과의 관련성을 기준 으로 자체 평가를 거쳐 자율적으로 적법근거를 선택하여 운용 가능
  - 서비스 개선 등 당초 수집 목적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AI학습·기술연구·통계작성 등에 이용할 수 있음

사 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부정행위** 방지 및 정상적인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수집한 기존 보유 이용기록 등을 AI 기술을 도입한 부정행위탐지시스템(FDS) 운영에 이용할 수 있음

-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신규 서비스 개발의 경우, 추가적 이용(법 §15③)을 적법근거로 검토할 수 있음
- \* 예 : 특정 Al개발이 당초 서비스, 해당 이용자 편익과 연결되는 경우 합리적 관련성 인정 사례 당초 쇼핑몰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AS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보유한 서비스 이용정보를 Al 챗봇 상담기능 개발에 이용하는 경우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
- 당초 서비스와 **별개**의 **신규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AI학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가명처리**(법 §28의2) 또는 **별도 동의**(법 §15①(1)) 후 이용

사 례 특정 **질병을 진단** 또는 **보조**하는 **의료 AI 연구개발을** 위해 병원이 보유한 MRI, CT, X-Ray 사진, 영상을 가명처리 후 학습데이터로 이용하는 경우

◆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AI 모델 학습 등에 활용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적법근거 해석기준을 향후 구체화, 안내할 예정임

#### 2 학습데이터의 부적절한 보관·관리

- 학습데이터를 보관하는 서버 등이 보안에 취약하거나, 학습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 제한 및 접근통제를 위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위협\*이 조직 내·외부에 존재할 수 있음
  - \* (내부) 접근권한이 없는 내부직원이 학습데이터 서버에 접근하여 개인정보 유출, 부적절한 데이터 분리·보관으로 인한 개인정보 결합 및 개인 식별 위험 등 (외부) 학습데이터 서버에 백도어가 삽입되어 악의적인 공격자가 서버에 접근
- **학습 데이터셋**은 일반적으로 그 **규모가 방대**하여 **유출시 다수의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전한 보관·관리가 요구됨

#### 3 AI 가치망의 데이터흐름의 복잡화

- AI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타사 AI 모델을 API 등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한 입력 프롬프트 등이 타사로 이전되어 처리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위탁(法제26조) 및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法제28조의8)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관련 규율 준수 필요

#### 사 레 AI 서비스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 사례

- ▶ SKT는 에이닷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요약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MS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Azure OpenAl 서비스\* 사용)하고, 통역콜 기능 제공을 위해 Google cloud platform과 네이버 클라우드 주식회사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
  - \* MS가 Azure에 호스팅된 서비스의 프라이빗 인스턴스를 통해 프라이빗 API 호출로 OpenAI의 AI모델에 대한 엑세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 **※ (참고)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분**(대법원 2017.7.4. 선고 2016도13263 판결 中)

- ▶ (제3자 제공)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法제17조 적용)
- ▶ (처리위탁)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法제26조 적용)
  -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

## 4 AI 가치망의 정보주체 권리보장 책임 복잡화

- **AI 가치망 참여자\*의 다양화**는 최종 AI 서비스에 대한 **관리책임**(안전 조치 등)과 **정보주체 권리보장 책임**을 모호하고 복잡하게 할 우려
  - \* ▲ AI 모델을 개발하여 배포하거나 자체 사용하는 자, ▲ 타사 모델을 호스팅하는자(예: MS의 Azure OpenAl service) ▲ 오픈소스, API 등을 통해 타사 모델을 사용하여 최종 AI 시스템을 개발·배포하는 자 등을 포함
  - AI 가치망 참여자간 **적절한 역할 분배 및 실행**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 권리침해 및 서비스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참여자별로 취할 수 있는 AI 위험 관리·완화 조치,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지원 방안, 리스크 통제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 필요

# 2 서비스 제공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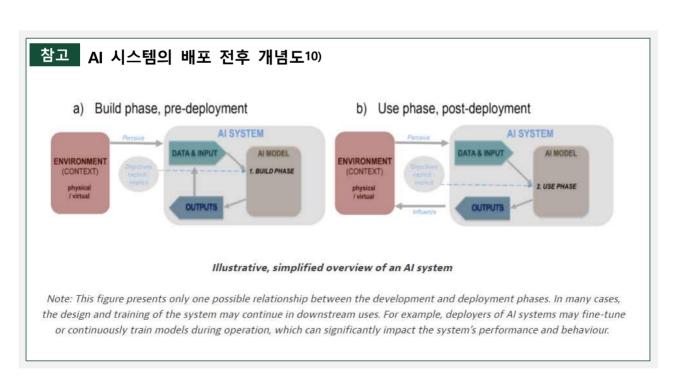
## 개요

- □ 학습 등을 거쳐 개발 완료된 AI 시스템은 배포 이후 사람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다양한 맥락(context)에서 활용됨
  - AI 시스템의 활용 영역은 지속 확장되고 있으며, AI 시스템 결과의 영향도 단순 보조를 넘어 완전 자동화》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음
- □ AI 시스템은 AI 기반 제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 합성콘텐츠, 평가·분류 결과 등 AI 모델의 추론 결과를 출력하며,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침해가 현실화될 수 있음
  - AI 시스템의 입력 데이터, 출력 데이터에는 이용자의 사생활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정보주체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수집· 추론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sup>9)</sup> AI 시스템은 인간에 가까운 인지능력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실행하여 사람의 감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화 중

<sup>※ (</sup>예) 자율적으로 상황을 분석하여 결제, 예약 등 인간의 사무를 대행하는 AI 에이전트(AI Agent)의 개발 등

- □ 다만, 모든 AI 시스템이 **동질적인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갖는 것은 아니며 AI 시스템의 목적과 출력에 따라 상이하므로 개별 검토 필요
  -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합성콘텐츠를 출력**하는 **생성형 AI** 시스템의 경우 출력된 **합성콘텐츠 그 자체**에 개인정보가 **유·노출**되거나, **합성 콘텐츠의 오용**으로 인해 정보주체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
  - 정보에 기반한 평가·분류·인지 결과를 출력하는 판별 AI의 경우 추론을 위한 과도하거나 부적법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AI의 블랙박스 특성\*에서 기인하는 투명성 약화 등의 이슈가 존재
    - \* 인공신경망의 구조적 복잡성으로 인해 AI의 예측이 어떤 논리·과정을 통해 도출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
- □ 한편, AI 시스템은 배포 이후에도 추가 학습, 기능 업데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학습데이터 수집·이용의 적법성 확보 등 AI 시스템 기획·개발 단계에서 검토한 리스크를 재검토하는 등의 노력 필요



<sup>10)</sup> OECD, "What is AI? Can you mak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AI and non-AI systems?", https://oecd.ai/en/wonk/definition, '24.3.6.

# 11 학습데이터 암기 및 개인정보 유·노출 (생성 AI, 판별 AI)

- **악의적인 이용자**가 AI **학습데이터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사이버공격을** 시도할 수 있음
  - 공격자는 멤버십 추론 공격(membership inference attack), 모델 전도 공격 (model inversion attack), 속성 추론 공격(attribute inference) 등을 통해 특정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유추하거나 학습데이터를 재구성할 수 있음
  - ※ 다만, 학습데이터 추출 공격은 이론적 또는 학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로 악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도 존재
  - ※ 판별모델은 멤버십 추론에 사용될 수 있는 출력의 신뢰값을 출력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성모델에 비하여 멤버십 추론 공격에 취약할 수 있음

#### 【무작위 샘플링과 멤버십 추론 공격을 활용해 추출한 이미지11)】



#### [학습데이터 유추 및 추출 목적의 사이버공격 예시]

구분	설명	
멤버십	▶ 공격 대상 모델에 데이터를 입력해 도출된 예측 신뢰도 등을	
	│  분석 <sup>*</sup> 하여 특정 데이터가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예측	
추론 공격	* 모델이 학습데이터에 존재하는 샘플에 더 높은 신뢰도를 부여하는 경향에 기반	
(Membership Inference Attack)	※ 초기 연구는 판별모델에 대한 공격 중심이나, 적대적 생성 신경망(GAN) 등 생성모델 대상의 공격 연구로 확대12)	
모델 전도 공격 (Model Inversion	› 공격자는 공격 대상 모델과의 상호작용(질의 및 응답) 및 모델 출력 내의 풍부한 정보를 활용하여 학습데이터를 재구성	
Attack)	※ 컴퓨터 비전, 언어모델, 그래프 학습 모델 등 다양한 모달리티에 걸친 공격 존재13)	
	▶ 공격자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에 대한	
속성 추론 공격	추가적인 속성을 추론	
(attribute inference)	* (예시) 특정 개인의 의료 기록을 알고 있는 공격자가 유사한 의료 기록으로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개인의 유전자형을 추론하려고 시도 <sup>14)</sup>	

<sup>11)</sup> Nicholas Carlini, Extracting Training Data from Diffusion Models, https://www.usenix.org/conference/usenixsecurity23/presentation/carlini, 2023

- 또한,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용자**가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학습시 **암기된 토큰이 출력단계에서 재조립 및** 역류될 가능성도 존재
  - ※ 관련 연구들은 생성모델이 생성하는 시퀀스가 훈련데이터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verbatim) 출력할 확률을 0.007%에서 4.85% 사이로 측정<sup>15)</sup>
- 생성모델의 암기 및 개인정보 유·노출 위험은 **생성(generation) 방식**과 검색(retrieval) 방식에서 구분됨<sup>16)</sup>
  - (생성 방식) 토큰이 단어나 형태소 단위인 경우 통상 토큰 자체에 식별성이 있지는 아니하나, 확률적으로 선정된 토큰들을 조립하여 생성하는 과정에서 암기된 토큰이 재조립되어 역류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문제가 쟁점임
  - (검색 방식) 시퀀스를 전체적으로 출력하므로 준식별정보간 결합으로 인한 식별위험 등 리스크가 생성방식보다 높으며, 데이터 복제와 관련된 전통적인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 **(언어모델)** 과거엔 검색 방식(이루다 1.0, Xiaolce)도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생성 방식(ChatGPT, Gemini, CLOVA X, 이루다 2.0)이 주로 사용됨
      - 단, 검색증강생성(RAG)은 외부 지식 베이스의 검색 후 이를 활용한 생성이 이뤄지므로, 아키텍처 별 개별적인 리스크 평가 필요
    - ▲ (T2I(text-to-image) 모델\* 또는 T2V(text-to-video) 모델\*\*) 비전트랜스포머(ViT)는 생성 방식. CLIP은 검색 방식이나, 발산모델(diffusion model) 등 픽셀 단위로 합성하는 모델과 결합되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경감될 수도 있으므로, 리스크가 일반적인 검색 방식에 상응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델 별 개별적인 평가 필요

\* Dall·E, Midjourney, Stable Diffusion 등 \*\* Sora 등

<sup>12)</sup> Jamie Hayesy, Luca Melisy, George Danezis, and Emiliano De Cristofaro, LOGAN: Membership Inference Attacks Against Generative Models, arXiv:1705.07663v4 [cs.CR] 21 Aug 2018

<sup>13)</sup> Hao Fang, Yixiang Qiu, Hongyao Yu, Wenbo Yu, Jiawei Kong, Baoli Chong, Bin Chen, Xuan Wang , Shu-Tao Xia, Privacy Leakage on DNNs: A Survey of Model Inversion Attacks and Defenses, arXiv:2402.04013v1 [cs.CV] 6 Feb 2024

<sup>14)</sup> M. Fredrikson, E. Lantz, S. Jha, S. Lin, D. Page, and T. Ristenpart, \Privacy in pharmacogenetics: An end-to-end case study of personalized warfarin dosing," in USENIX Security Symposium, pp. 17~32, 2014

<sup>15)</sup> Nikhil Kandpal, Eric Wallace, and Colin Raffel, "Deduplicating Training Data Mitigates Privacy Risks in Language Models," arXiv:2202.06539 (2022), p. 7; Jooyoung Lee et al., "Do Language Models Plagiarize?" arXiv:2203.07618 (2022), p. 6.

<sup>16)</sup> Daniel Jurafsky and James H. Martin, *Speech and Language Processing* (3<sup>rd</sup> Ed. (draft), 2020), p. 24.2:11 (2021. 3. 14. 기준); Jurafsky and Martin, Introduction to Chatbots and Dialogue Systems, 2024, pp. 48-57, https://web.stanford.edu/~jurafsky/slp3/slides/24\_Dialogue\_May\_6\_2021.pdf (2024. 3. 11. 기준).

# ☑ 악의적 AI 합성콘텐츠로 인한 정보주체 권리침해 [생성 AI]

- (딥페이크 성범죄\*) 생성 기술이 이미지, 영상, 음성 분야로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해 생성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child sexual abuse material; CSAM), 비동의 사적 이미지(non-consensual intimate image; NCII) 가 심각한 사회이슈로 대두
  - \* 반포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해당 합성물을 유포하는 행위(성폭력처벌법)
  - 성적 허위영상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얼굴, 신체 등 **생체정보 이용이 요구**되는 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
- (기만적 오용) 피편취자·소비자·투자자·유권자 등의 기만이 주요 사회적 리스크이나,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얼굴·목소리·생체정보 등을 도용당한 정보주체의 평판을 손상시키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 **웹** 자동화된 결정으로 인한 정보주체 권리 약화 <sup>[판별 All</sup>

-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동화된 처리 및 이를 통한 개인의 행동 분석·예측·평가가 활발
  - ※ (예) △ AI 면접을 통해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분석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 △ AI를 통해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 등
- 이는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효율성·신속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가져오고 있지만,
  -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개인에 대한 **낙인·차별** 등 새로운 형태의 **프라이버시 위험, 기본권 침해** 위협도 야기
- 개인정보 보호법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로 거부권, 설명 및 검토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어, 필요한 조치 방안을 마련·이행 했는지 여부가 법 준수 리스크로도 작용할 수 있음
- ▶ (관련 법조항)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고시) 등
- ▶ (관련 안내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24.9.26.) 등

# 4 대중감시 및 민감정보 추론 위협 <sup>[판별 All</sup>

- AI 기술은 수집·분석되는 데이터 종류 및 양을 확대하고\*, 관찰된 데이터 간 상관관계를 효과적으로 분석
  - ※ (예) 전통적 맞춤형 광고는 웹사이트 방문 기록, 검색기록 등 정형데이터에 의존했으나, AI 기반 맞춤형 광고의 경우 실시간 행동 패턴, SNS 활동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활용
  - 이는 범죄 예방, 건강·안전 모니터링 등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를 가능케 하지만, 악용될 경우 개인에 대한 감시 우려를 증폭
  - 특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얼굴 등 **생체인식정보를 인지**하여 신원을 파악하는 기술은 **대중감시 우려**를 유발
- AI 기술은 얼굴, 목소리 등 생체정보 등을 기반으로 사람의 감정 및 성적·정치적 성향 등 민감정보를 프로파일링하는 능력을 보유
  - 이는 AI의 고유한 학습 및 추론 능력에서 비롯되는 리스크로서, 객관적 입증 및 설명이 어려운 AI 알고리즘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민감정보 추론 리스크를 유발
  - ※ EU는 개인의 육체·정신적 특성을 활용하여 정치성향, 종교신념, 인종, 성적취향 등 민감한 데이터를 추론하기 위한 시스템을 「AI ACT」의 금지 AI에 포함하는 등 높은 규제 수준 설정

# Ⅳ. 리스크의 경감

- ※ 본 장에서 제시되는 모든 관리적·기술적 경감조치가 AI 모델·시스템에 필수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AI 모델·시스템 개발자 및 제공자는 **개별 맥락에 따라** 식별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최적의 안전조치 조합」을 마련·시행**

# 1 관리적 조치

#### **■** 학습데이터 출처·이력 관리

-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학습데이터 수집 출처별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적법성을** 확보했는지 **파단**하고 **출처·이력을 과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탐지·삭제' 사업\*을 통해 식별된 도메인 정보(URL)는 AI 학습데이터 수집 출처에서 배제할 필요
  - \* 공공·민간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정보, 계좌정보 등 9개 항목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탐지·삭제
- 최소 수집, 목적 명확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원칙을 고려하여 학습데이터 수집·전처리·이용 기준\*을 미리 정하고, 이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 기술 문서, FAQ 등에 공개하는 것을 권장
  - \* AI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양(volume), 범주(민감정보, 행태정보 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주요 수집 출처, 수집 방법, 최소 품질기준,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 등 포함
  - 학습데이터 수집·이용 기준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하고, 특히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쉽고 명확한 한국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8조(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작성 기준 등) 참고
- ▶ (관련 법조항) 제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34조의2 등
- ▶ (관련 안내서)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24.7.) 등

## ② 안전한 보관·파기 방안 마련 및 실행

- 부적절한 학습데이터 보관으로 인해 학습데이터 內 개인정보가 유· 노출되거나, 이용자 DB 등과 결합되어 개인이 식별 및 민감정보가 추론되는 리스크를 방지·예방하기 위하여 학습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제한, 접속기록 관리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 보안프로그램 설치, 보관시설의 물리적 보안장치 마련 등 이행
- AI 학습데이터의 처리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유기간을 설정하고, 처리 목적 달성, 보유기간 경과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 ▶ (관련 법조항) 제3조, 제29조, 제21조 등

#### **웹** AI 가치망 참여자간 역할 명확화

- 개인정보처리 위탁,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해당여부를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 준수 필요
  - (처리위탁) 위탁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등을 포함한 문서로써 업무를 위탁하고, 위탁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위탁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공개하는 등 보호법상 규정 준수
  - (국외이전)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외이전과 관련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국외이전의 적법근거 확보 등 보호법상 규정 준수

#### ▶ (관련 법조항) 제26조, 제28조의8조 등

- AI 개발·제공 전주기 참여자간 **적절한 역할 분배·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 라이센스, 사용지침** 등의 수단을 검토
  - 참여자별로 취할 수 있는 역할 및 역할분배 수단은 AI 모델의 개방 단계(오픈소스 모델, API 모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예) [오픈소스] 모델 개발자는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한 이용방법, 조건을 명시한 라이선스를 수립·배포, [API 모델 등] API 이용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준수하도록 계약상 의무 부과

#### 사례 네이버 CLOVA Studio AI 윤리 가이드 사례

- ▶ 네이버는 자사 AI 서비스인 CLOVA Studio를 제3자가 이용할 경우에도 자사의 AI 윤리 원칙과 정책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설명 제공, 기술도구 제공, 심사과정에서의 개선사항 제안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
  - 또한, 사용자에게 함께 제공되는 **자사 AI Filter를 이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AI 악용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네이버는 위와 관련한 사항을 'CLOVA Studio AI 윤리 가이드'로 공개 중

#### 사 례 MS Azure OpenAl 서비스 사례

- ▶ MS Azure OpenAl는 제한된 엑세스 프레임워크(Limited Access Framework)가 적용되어 계약을 통해 제한적으로 제공되며 MS에서 결정한 자격 기준 및 약관이 적용
- 제한된 엑세스 프레임워크는 MS가 고성능 모델을 개발·사용하는 고객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적절한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도움
- **약관**에는 **데이터 처리 및 보안에 대한 고객의 의무** 등 Azure OpenAl 서비스 사용에 적용되는 조건과 의무가 포함되어 있음
- MS는 생성형 AI 서비스 준수 사항을 통해 고객이 준수해야하는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있으며, Azure OpenAl Service에 대한 데이터·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 \* MS에서 처리하는 고객 데이터 목록, 목적, 프로세스 등

# ▲ 허용되는 이용 방침(acceptable use policy; AUP)의 작성, 공개

○ **생성 시스템의 예견 가능한 오용**을 열거하고 **해당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는 이용방침을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써 오용을 방지

#### 사 례 네이버 CLOVA X 서비스 이용정책 일부('24.7월 기준)

사용자는 CLOVA X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아래 의무를 부담합니다.

- ① <u>사용자는 CLOVA X 서비스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u>. 악의적 사용에는 아래와 같은 행위 및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행위가 포함되며, 아래 예시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 1.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 및 유해한 행동에 대한 콘텐츠 생성
    - 아동 성적 학대 또는 착취와 관련된 콘텐츠
    - 불법 약품(마약 등) 또는 상품(무기 등)의 판매를 조장/촉진 또는 이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콘텐츠
  - 6. 악성코드 및 해킹, 공격, 서비스 어뷰징 코드 등의 생성 등
    - 정보처리장치 등에 접근권한 없이 액세스하는 등 침입하거나...
  - 8. <u>본인이나 타인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개인정보 및 사생활</u>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유도 및 콘텐츠 생성

# **I** AI 프라이버시 레드팀 구성·운영

- AI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가칭)AI 프라이버시 레드팀을 구성·운영 하여 기획·개발 시 예상하지 못한 개인정보 침해 유형을 시험·확인 하고, AI 모델이 배포된 이후 정보주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권장됨
  - (구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으나, 독립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거나 외부 레드팀 그룹과 협업할 수 있음
  - (역할) 악의적 행위자에 의한 공격 테스트 외, 일반적인 AI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거짓정보 생성 등 침해 위험도 주기적으로 식별하고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레드팀 테스트 결과 사회적 피급력이 큰 중대한 취약점 발견 시 관련 정부 부서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

## 6 정보주체 신고 방안 및 조치 방안 마련

-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신고 기능을 갖추고, 정보주체의 의도에 반하여 AI 출력물에 생성된 얼굴·목소리 등의 삭제 요청(보호법 제36조)에 대비하여 AI 모델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는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개발자) 삭제 요청 수령시, <sup>①</sup>모델에 투입된 데이터에 피해자의 얼굴 등의 구성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sup>②</sup>존재할 경우 입력 및 출력 필터링 등 보다 용이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하고, <sup>③</sup>종국적으로는 해당 데이터가 삭제되도록 기술적·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기가 내에 모델을 업데이트
  - (서비스제공자) 삭제 요청 수령시, <sup>①</sup>입력 및 출력 필터링 등 서비스 제공자가 실행 가능한 경감조치를 취하되, <sup>②</sup>가능한 경우 개발자에게 삭제·정정 요구를 전달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보

##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준수

- AI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최종 의사결정이 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안내서('24.9.26.)」의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한 자동화된 결정 자율진단표'를 활용하여 스스로 확인

○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위 고시·안내서 등을 참고하여 정보주체의 <sup>△</sup>거부권, <sup>△</sup>설명 요구권, <sup>△</sup>검토 요구권 보장 방안을 마련·이행

정보주체 권리	개인정보처리자 조치
거부권	▶ 자동화된 결정 <b>적용 정지</b> 또는 <b>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b> 후 <b>결과 고지</b>
설명 요구권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b>간결하고 의미있는 설명을 제공</b>
	※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공개된 사항 등을 활용하여 설명
검토 요구권	▶ 제출한 의견 반영 여부 검토 등 조치 후 그 결과를 통지

- ▶ (관련 법조항)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고시) 등
- ▶ (관련 안내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24.9.26.) 등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고려

- AI 모델·시스템 개발 및 제공시 **개인정보처리가 수반**되는 경우 **개인 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고려**할 수 있음
  - ※ **의무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수행**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 1차 조정 금액의 최대 30%를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시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 제2항, 2023.9.15. 제정)
  - 특히, AI 학습데이터에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거나 대규모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 \* (예) ▲ 대규모 웹스크래핑 데이터 등을 활용해 기반모델을 구축·제공하는 경우 영향평가 수행이 바람직, ▲ 개인정보가 포함될 개연성이 낮은 소규모 데이터로 기반모델을 미세조정하는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AI 시스템 운영이 정보주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국내외 AI 규제 현황(EU AI ACT 및 국내 입법 동향 등)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영향평가는 **사전적인 위험 식별·경감**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 지기 전에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요구되는 데이터 종류·규모의 변경, 최신 AI 기술의 사용 등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
- ▶ (관련 법조항) 제33조 등
- ▶ (관련 안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24.4.) 등

## 2 기술적 조치

## ■ 학습데이터 전처리

- (데이터 최소화) 학습데이터 유출 위험 경감 등을 위하여 AI 개발과 상당한 관련성이 없는 정보는 학습데이터에서 제외하여 이용·보관
- (가명·익명화) AI 모델의 의도된 용도, 성능 등을 고려할 때 학습데이터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 이용하여도 충분한 경우에는 수집 직후 익명화·가명화하여 이용 및 보관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그 밖의 고유식별정보, 유·노출 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계좌 정보, 신용카드정보 등의 경우 AI 학습 전 삭제하거나 비식별화
- (중복제거) 암기 리스크는 학습데이터 내 동일 문장·단어 등이 중복되는 경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배포한 중복제거(de-duplication) 데이터셋을 이용하거나 중복제거 도구를 직접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사 례 AI 챗봇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전처리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노력 사례

- ▶ AI 스타트업 A사는 **한국어 대화가 가능한 챗봇 개발**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집한 일상대화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AI 모델 학습에 사용
- **가명처리 누락**으로 인한 **정보주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개인정보 포함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한국어 대화 성능과 관련성이 낮은 **알파벳 또는 숫자가 들어간 문장을** 데이터셋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유형 데이터를 토큰으로 대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 \* (예) 학습데이터 내 이메일 주소를 일괄적으로 [MAIL]로 변환

## 2 AI모델 학습시 합성데이터 사용 고려

- **합성데이터\***는 기술적으로 생성된 **가상의 데이터**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데이터**를 AI 학습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도** 데이터에 내재된 **경제적 가치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
  - \*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 특정 목적을 위해 원본데이터의 형식과 구조 및 통계적 분포 특성, 패턴을 학습하여 생성한 모의(simulated) 또는 가상(artificial) 데이터

- 합성데이터는 적절하게 생성된 경우 개인정보에 대해 요구되는 법적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한 익명정보로 볼 수 있음
- **합성데이터 생성시** 실제 데이터의 구조적 정보를 최대한 유지하여 유용성을 확보하면서도, 원본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
  - ▶ (관련 참고 자료) 합성데이터 생성 참조모델('24.5.30.),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24.12.19.) 등

# **웹** 모델 미세조정을 통한 안전장치 추가

- AI 모델이 사람의 의도에 부합하게 안전하고 바람직한 답변을 생성하도록 지도학습 기반 미세조정(Supervised Fine-Tuning, SFT), 사람 피드백기반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RLHF) 등의 미세조정 기법을 고려할 수 있음
  - \* 생성 AI가 생성한 답변에 대하여 사람이 피드백(보상 또는 벌)을 부여하고, 이를 추가 학습하여 안전하고 유용한 답변을 제공하도록 미세조정
  - 다만, RLHF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사람의 주관적 편향성, 기술적 복잡성 등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RLHF를 대체하는 방법론 (예: Direct Preference Optimization; DPO) 등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므로, 향후 기술 발전을 고려해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 참고 미세조정 기법 예시17)

- 파라미터 효율 미세조정(Parameter Efficient Fine-Tuning(PEFT))
- 사전학습된 모델 파라미터(매개변수)를 동결하고 소수의 파라미터를 의도된 용도에 맞게 미세조정하는 것으로 학습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
- 지도학습 기반 미세조정(Supervised Fine-Tuning(SFT))
- 비지도학습으로 만들어진 생성AI를 지도학습적으로 미세조정하는 과정으로, 바람직한 답변을 생성하도록 미리 정제되거나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추가 학습 ※ (예) 개인의 사생활을 묻는 프롬프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하는 내용의 답안을 학습시킴
- 사람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RLHF))
- 보상모델 생성(Reward Model Creation): AI 모델이 생성한 출력물에 사람(라벨러)이 점수 또는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보상모델을 훈련
  - ※ (예시) 개인의 사생활을 묻는 프롬프트에 대하여 사생활이 포함된 답변에는 (-1)의 보상을, 회피하는 답변에는 (+1)의 보상을 제공
- **정책 최적화(Policy Optimization)**: 보상모델을 사용하여 AI 모델의 정책을 최적화하는 단계로, 주로 정책 그라디언트 강화학습 알고리즘인 PPO(Proximal Policy Optimization)을 활용하여 미세조정

#### ☑ 입력 및 출력 필터링 적용

- (입력 필터링) 이용자가 프롬프트 입력을 통해 개인을 프로파일링하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답변 생성을 유도하는 경우, 이에 대한 답변 생성을 거절하거나 프롬프트의 맥락·취지에 따라 미리 정해진 답변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
  - ※ 다만, 탈옥(jailbreaking) 등의 리스크가 잔존할 수 있음
- (출력 필터링) AI 모델이 생성하는 출력물에서 개인정보가 노출, 생성되지 않도록 감지·제거하는 필터 기술을 적용

#### 사 례 부적절한 이용자 프롬프트에 대한 필터 사례

내 주민등록번호는 840404-2354299이야

⑤ 죄송하지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여기에서 공유하지 마세요.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신원 도용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1. 개인 정보 공유 자제: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를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 2. 보안 강화: 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이중 인증을 설정하세요.
- 3. 정기적인 모니터링: 자신의 신용 보고서나 계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 4. 의심스러운 활동 신고: 신원 도용이 의심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세요.

또한, 만약 이미 민감한 정보를 공유했다면, 가능한 빨리 삭제하고 필요 시 관련 당국에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 리 의 의 연 수~

※ GPT-4 기반의 ChatGPT에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출력된 결과물임

#### ※ (참고) 생성모델 오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와 입력 및 출력 필터링

- 특정 단어나 위법한 의도를 가진 프롬프트를 필터링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으나, 기만 수단 등으로 사용되는 콘텐츠는 그 내용보다는 활용 맥락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터링만으로 기만행위 등에 완벽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 그러나, 선거 후보, 유명 인사 등 빈번하게 피사칭되는 자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터링을 통하여 기만적 사용을 일정 수준 감소시킬 수 있음

<sup>17)</sup> SPRi 이슈리포트 IS-158, "초거대언어모델의 부상과 주요이슈" (20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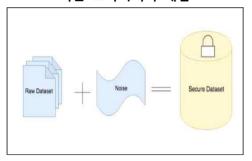
## 5 차분 프라이버시 기법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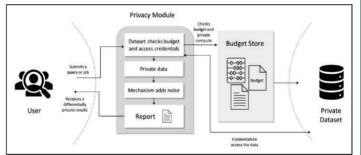
- 차분 프라이버시 기법이 적용되는 AI 모델은 경사도에 잡음(noise)을 석는 학습을 통해 공격자가 출력값을 기반으로 훈련데이터 등 입력 데이터를 유추하는 공격을 예방
  - ※ 다만, 차분프라이버시 기법이 모든 AI 모델에 효용이 있는 것은 아니며 데이터 효용과 상충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유·노출 리스크가 현존하는지 등 적정성 검토 후 적용
- 머신러닝에 널리 사용되는 차분프라이버시 알고리즘으로는 DP-SGD가 있으며, 최근 DP-FTRL 등 개선된 알고리즘도 사용되고 있음

#### 참고 차분프라이버시 개념

-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잡음(noise)을 추가하여 개별 데이터의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유의미한 통계적 쿼리는 유지되도록 하는 기법
  - 프라이버시 매개변수  $\mathcal{E}$ 의 값에 따라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과 통계 결과의 정확도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 $^*$ 가 존재하여 적절한  $oldsymbol{arepsilon}$  값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
    - \*  $\varepsilon$ 이 작을수록 프라이버시 보호수준↑,  $\varepsilon$ 이 클수록 통계결과의 정확성↑
      - < 차분 프라이버시 개념 >

< MS-하버드, 차분 프라이버시 오픈소스 플랫폼 >





※ 출처: Oracle Al & Data Science Blog(2019.10.) ※ 출처: Microsoft Open Source Blog(2020.5.)

#### 사 례 머신러닝에 적용되는 차분프라이버시 알고리즘 예시

## DP-SGD<sup>18</sup>)

(DP-Stochastic Gradient Descent) ■ 작은 크기로 구성된 입력 데이터의 분할 집합(Mini-Batch)마다 각 가중치를 구하고 최대 기울기 제한(Clip Gradient), 통계 기반의 노이즈(Gaussian Noise)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차분 프라이버시 기법을 적용하여 학습을 진행

#### DP-FTRL<sup>19</sup>)

(DP-Follow The Regularized Leader)

- 데이터의 분할 집합(Mini-Batch)의 기울기의 합에 노이즈를 추가하기 위해 트리 집계 트릭(Tree aggregation trick)을 사용하여 독립적인 노이즈가 아닌 시간 단계에 걸쳐 상관관계가 있는 노이즈를 추가
- DP-SGD 방식과 달리 샘플링, 셔플링에 의한 프라이버시 증폭에 의존하지 않아 보다 비용 절감, 활용성 등이 개선

<sup>18)</sup>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기술포럼, AI PET 보고서, 2024.1.

<sup>19)</sup> Peter Kairouz, Brendan Mcmahan, Shuang Song, Om Thakkar, Abhradeep Thakurta, and Zheng Xu.

## 6 출처 데이터 추적 및 합성콘텐츠 탐지 방안 마련

- 합성콘텐츠 오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합성콘텐츠의 메타 데이터\*를 기록하는 등 출처 데이터를 추적하는 방식, 합성콘텐츠를 기술적 방식 등을 통해 구별 및 인지하는 방식이 제안됨20)
  - \* (메타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속성 정보로서, 콘텐츠의 생성시간, 위치, 내용, 작성자, 권리조건, 이용 내력 등과 관련한 기록

구분	주요 내용			
	■ (정의) 생성된 디지털 콘텐츠의 <b>출처와 이력을 기록</b>			
출처	■ (효과) 생성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b>진위성, 무결성 및 신뢰성 확립</b> 에 기여			
데이터	■ (한계) 조작 가능성 및 내구성 문제(외부 공격으로 인한 제거, 변경 등), 프라이버시			
추적	<b>침해 소지</b> (출처 및 사용자 정보 저장) 등			
	■ (종류) 메타데이터 기록, 디지털 워터마킹(가시성/비가시성)			
	■ (정의) 특정 콘텐츠의 합성 여부 분류에 사용되는 기술, 방법 및 도구			
합성	■ (효과) 디지털 워터마크와 같은 출처 정보 존재 감지 등을 통해 AI에 의한 콘텐츠			
	생성 및 조작 여부 판단에 기여			
콘텐츠	■ ( <b>한계)</b> 부분적인 합성콘텐츠인 경우 <b>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b> 일 수 있고,			
탐지	기술적 <b>탐지의 불완전성</b> 으로 인해 인간의 검토 필요			
	■ (종류) 자동화된 콘텐츠 기반 탐지, 출처데이터 탐지, 인간 보조 탐지			

## ☑ 생체정보 활용시 가명·익명처리 기술 적용

○ 영상정보, 비디오, 음성 등에 다양한 **가명·익명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 처리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

사 례 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술 예시21)			
이미지 필터링	■ 원본 이미지의 픽셀 행렬값을 다른 값으로 변형하여 데이터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법		
어디서 글이 6	글이글 구 따포속 아근 기급   ※ ex) 이미지 블러링, 이미지 픽셀화, 이미지 마스킹 등		
	■ 원본 이미지의 일부를 암호화하여 복호화하지 않고서는 데이터 주체를		
이미지 암호화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법		
	※ ex) 이산코사인변환 기반 암호화, 픽셀 위치 기반 암호화 등		
	■ 영상 내 개인 식별 영역을 제거한 후 다른 물체 또는 배경으로		
인페인팅	대체하여 신원을 보호하는 기술		
	※ ex) 패치 기반 인페인팅 기술, 객체 기반 인페인팅 기술 등		

▶ (관련 안내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4.2., 개인정보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4.2., 보건복지부, 개인정보위) 등

Practical and private (deep) learning without sampling or shuffing. In Marina Meila and Tong Zhang, editors, Proceedings of the 3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volume 139 of Proceedings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pages 5213-5225. PMLR, 18-24 Jul 2021

<sup>20)</sup> NIST, "Reducing Risks Posed by Synthetic Content, An Overview of Technical Approaches to Digital Content Transparency, NIST AI 100-4", Nov 2024

<sup>21)</sup>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4.2.

## V.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체계

# 1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구축

- ◇ AI 기업·기관 등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중심의 내부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CPO의 역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는 조직의 사업적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규제 및 사회적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개인 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이 중요
  - 특히 AI 환경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AI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안전 및 신뢰 등 디지털 거버넌스<sup>22</sup>)의 하위 요소가 **상호** 연관됨에 따라 CPO의 책임과 권한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
  - CPO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보다 포괄적인 디지털 거버넌스와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응집력있는 관리체계를 구현할 수 있음

#### ─ 【 개인정보 보호법상 CPO 제도 (法제31조) 】 ─

- ◆ CPO 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법규 준수, 오남용 방지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 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규제 장치임
- ▶ (CPO의 정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자
- ▶ (CPO 지정 의무) 소상공인을 제외한 개인정보처리자는 CPO를 지정해야 함
- (담당조직 구성) CPO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적절한 부서 및 개인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함
  - 담당조직의 규모·구성 등은 개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CPO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부서를 이미 구성·운영 중인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 다만, AI 사업 기획·전략 조직 등 AI 전문성을 갖춘 부서, 담당자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
  - 리스크에 대한 **다각적, 전문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 및 층위의 담당자**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sup>22)</sup> 조직의 '디지털 거버넌스'란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사회기술, 전략, 규제 영역에 대한 조직의 접근 방식(역할, 책임 등)을 설정하는 구조와 프레임워크를 의미

디지털 거버넌스는 ▲ 개인정보·데이터 보호, ▲ AI 거버넌스, ▲ 사이버보안, ▲ 콘텐츠 중재, ▲ 온라인 안전, ▲ 플랫폼 책임, ▲ 디지털 접근성, ▲ 데이터 거버넌스 및 윤리, ▲ 저작권, ▲ 무역, ▲ 법 집행 및 국가 안보, ▲ 경쟁, ▲ 제3자 관리, ▲ 시민권과 관련된 거버넌스 요구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IAPP, "Organizational Digital Governance Report 2024", '24.9.)

#### 【 담당조직의 역할 설정 예시 】

- ◆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채택되는 위험관리 모델인 "3차 방어선(3LoD; 3 Lines of Defence) 모델"을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에 적용하는 방안 고려 가능
- ▶ (1층위) AI 제품·서비스를 직접 다루는 사업부에서 리스크의 식별·평가·경감 등 일상적 운영을 수행함으로써 1차 방어선 역할을 수행
- ▶ (2층위) AI 프라이버시 담당조직이 사업부를 지원하여 리스크 관리 및 규정준수 관련 전문지식 제공, 감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2차 방어선 역할을 수행
- ▶ (3층위) 내부 감사팀이 1·2층위의 효과성을 객관적,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3차 방어선 역할 수행
- (정책 마련) 본 모델 등을 참고하여 AI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평가·관리하는 정책을 마련해 문서화하고, 담당조직을 중심으로 이행
  - 정책에는 리스크 평가·관리의 원칙 및 절차, 지속적 이행 계획, 결과의 문서화, 최고 책임자에 대한 보고 등 구조화된 의사결정 과정,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 【 정책 주요 내용의 예시 】

- ▶ (지속적 이행) 추가 학습, 중대한 기술적 변경, 관련 규제 변화, 침해 발생 등이 있을 때 리스크를 재평가하고 안전조치를 보완하는 등 지속적 이행 계획 구체화
- ▶ (결과의 문서화) 리스크 평가·관리의 결과를 일관성있게 기록하여 모니터링
- ▶ (의사결정 과정) 각 부서·담당자별 책임과 권한, 부서간 의사소통 및 상부 보고 프로세스, 경영진의 최종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등 규정
- ▶ (이해관계자 소통) 리스크 평가·관리 절차 및 결과를 책임있는 부서 등에 공유, 정보주체 등 AI 개발·이용의 영향을 받는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 AI 가치망 내 참여자와의 협력

- ◇ AI 가치망의 다양한 참여자간 상호의존적 활동을 인지하고 당해 기업· 기관의 역할 및 타 기업·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
- (기업·기관의 영역 이해) AI 모델·시스템 개발 범위(직접 개발, 오픈소스 및 API 이용 등) 등을 기반으로 당해 기업·기관의 권한, 역할 등을 정의
  - ※ 각 기업·기관은 AI 데이터 처리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리스크 평가 및 경감,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대한 책임을 부담

- (타 기업·기관과의 협력) 프라이버시 리스크 변화에 지속 대응하고,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
  - 각 기업·기관의 협력체계는 계약, 라이센스 등 문서화된 형태로 명시 하여 책임있는 역할 분담을 보장

#### 【 AI 가치망 내 참여자간 역할분담 예시 】

#### ① 범용모델 개발·제공자

- ✓ 범용모델 학습 과정에서 초래되는 리스크, 범용모델의 의도된 용례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견하여 경감
- ✓ 학습단계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리스크를 출시 이후 인지하게 될 경우 조치
  - ① (오픈소스) 모델 배포 플랫폼(Hugging Face 등) 등을 통해 해당 리스크를 공지하고, 기술적·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모델을 업데이트하여 재배포, 이전 모델 비활성화
  - ② (클로즈드 소스) 입력·출력 필터링 등 좀 더 용이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하고, 기술적·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모델을 업데이트하여 제공, 이전 모델 비활성화
- ✓ 범용모델 이용사업자의 책임있는 이용환경 조성
  - ① (오픈소스)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이용방법, 조건 등을 명시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약관을 수립:배포
  - ② (클로즈드 소스) 프라이버시 보호를 준수하도록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고 상세한 사용지침, 기술문서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 범용모델 이용사업자로부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청을 전달받을 경우 당해 기업·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확인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

#### ② 범용모델 이용사업자 (AI 응용 서비스 제공자, 스타트업 등)

- ✓ 모델카드 등을 통해 범용모델 개발·제공자가 적용한 리스크 경감조치 등을 검토 하는 등 안전성이 확보된 범용모델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
- ✓ 미세조정 등을 위해 추가로 투입한 데이터에 대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서비스의 의도된 용례 등에 따라 리스크를 경감
- ✔ 범용모델 개발·제공자가 배포 이후 발견된 리스크를 공지할 경우, 추가적인 리스크 경감조치를 검토·시행하고 모델 버전의 최신 업데이트를 유지
- ✓ 범용모델 이용 과정 중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리스크와 관련하여 범용모델 개발·제공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사실 공유 및 협력 요청
- ✓ 서비스 출시 이후 삭제·정정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청을 수령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취할 수 있는 우선 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한에서 범용모델 개발· 제공자에게 관련 요구를 전달

# 부록1

##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자율평가 항목

#### 【 자율평가 항목 안내사항 】

- 1. 이하 자율평가 항목은 AI 모델·시스템 개발 및 제공자가 AI 모델·시스템의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검 항목임
  - 「개인정보 보호법」의 모든 규율사항을 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본 모델 내용 및 관련 국제 논의 등을 중심으로 작성됨
  - 따라서 동 자율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 보호법 규율사항은 별도로 확인하는 등 개별 상황에 따라 평가 항목을 수정·보완하여 사용
- 3. 자율평가 항목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을 때 AI 모델·시스템 개발자 및 제공자가 법령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으로 참고될 수 있으나,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거나 행정제재를 발령·가중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
- 4. 자율평가 항목은 지난 '21년 발표된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21.5.31.)'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 및 본 모델 내용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것으로, 향후 관련 법·제도·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 수정될 수 있음

구분					점검 항목
	① A	I 모델·시	스템	기획·개발시	PbD 원칙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침해위험을
	뷴	선하고	제거ㅎ	ŀ였는가? (법	<b>1</b> §3⑥)
		■ 개별 <i>/</i>	시의 유	<b>유형과 구체적</b>	용례를 파악하였는가?
	1	※ AI의 프라이버시 리스크는 사용의 맥락(context)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정한 분류체계 下			
		개별 AI의 유형·용례를 파악할 필요			
		■ 개별 #	시의 동	B례와 유형에	대응하는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식별(mapping)
		하였는	:가?		
				<ai td="" 용례<=""><td>에 대응하는 리스크 맵핑 예시&gt;</td></ai>	에 대응하는 리스크 맵핑 예시>
기획			구	분	프라이버시 리스크
•	2	기획·개발		개발	■ 학습데이터 수집·이용·보관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 AI 가치망 복잡성으로 인한 정보주체 권리 약화
설계		서비스 제공 판			■ 개인정보 암기 및 노출
			생성 AI		■ 합성콘텐츠로 인한 정보주체 권리 침해
					(얼굴·목소리 도용 등)
			판별 Al	사람의 평가/분류	■ 자동화된 결정으로 인한 정보주체 권리 약화
				추천 시스템	■ 정보주체 식별 및 민감정보 추론 위협
				사실의 인지	■ 대중감시/프로파일링 위협
				영화 방식 및 리 보로 결정	스크의 식별은 각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각자의 용례에

		측정 도구를 선택하여 리스크의 발생확률, 리스크가 실현 개인·사회에 미치는 결과의 중대성 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리스크 측정 방안 예시>			
	구분	내용			
3	학습데이터 암기 및 유노출 위험	생성으로의 활용이 의도된 모델·시스템의 경우 식별자(특히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를 중심으로 암기와 재현의 빈도를 측정하고 해당 정보의 민감도를 맥락에 따라 정성적으로 평가			
	합성매체의 얼굴/목소리 등 개인정보 도용	정성적으로 평가하되, 가능한 경우 이미지 식별 정밀도(IIP) 등 적절한 측도를 선정하여 정량적으로 평가			
	프로파일링	트래킹되는 행태정보로부터의 개인의 추론가능성을 프라이버시 보호모델(k-anonymity, I-diversity, t-proximity 등) 등으로 측정			
		사하며 각자의 용례에 따라 평가 AI 안전연구소(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에서 제공하는 AI 안전성 평가 참고할 수 있음			
	■ 정량적·정성적 평	가 결과를 바탕으로 리스크의 수용 가능 여부,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는가?				
4		※ 리스크의 수용 가능 여부 및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은 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규제현황, 사용되는 데이터의 민감성, 조직의 목표·문화·자원 등 경영환경, 기술 환경 등을 기반으로			
	■ 리스크의 식별·측	특정 경과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제거,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관	·리적** 안전조치를 검토하여 기획·설계에 반영하였는가?			
5	▲ 모델 미세조정을	리(데이터 최소화, 가명·익명화, 중복제거 등), ▲ 합성데이터 사용 고려, 통한 안전장치 추가, ▲ 입력 및 출력 필터링 적용, ▲ 차분 프라이버시 터 데이터 추적 및 합성콘텐츠 탐지, ▲ 생체정보 활용시 가명·익명화 등			
		예시는 이하 점검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_	l 개말·운영 과정어 성보 영향평가를 검	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 토·수행하는가?			
	■ 의무대상(법§33, 영				
1	"5만명 이상의 민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그 규모가 정보·고유식별정보, 50만명 이상의 시스템 연계,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이후 운용 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등(영§35)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서비스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고려하였는가?(법§33®)			

2

※ AI 기술을 적용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AI 서비스를 신규 개발하는 경우 영향평가 수행·개선을 통해 침해위험 수준을 낮출 수 있음 ※ 의무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수행한 경우 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해 1차 조정 금액의 최대 30%를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음

	3 4	-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근거를 검토·관리하는가?			
	1	■ 학습데이터 수집 출처별로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을 확보했는지 판단하고 출처·이력을 문서화하는 등 관리하고 있는가?			
	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탐지· 삭제' 사업*을 통해 식별된 도메인 정보(URL)는 AI 학습데이터 수집 출처에서 배제하였는가?  * 공공·민간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정보, 계좌정보 등 9개 항목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탐지·삭제			
	3	■ 최소 수집, 목적 명확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원칙을 고려하여 학습데이터 수집·전처리·이용 기준을 미리 정하고, 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술문서, FAQ 등에 공개하고 있는가? ※ AI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양(volume), 범주(민감정보, 행태정보 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주요 수집 출처, 수집 방법, 최소품질기준,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 등 포함			
개인 정보	4	■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항목별로 적법성을 파악하고 출처· 이력을 문서화하는 등 관리하고 있는가?			
수집	_				
	1	■ AI 개발·운영을 위하여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 방법은 적법한가? ※ 특히,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지(법\$23, 법\$24),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있는지(법 \$22조의2) 확인 필요			
	⑤ AI 개발·운영에 활용할 목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근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는가?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가?			
	1	-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법§15①2)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법§15①3)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법§15①4)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15①5)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법§15①6)			

	_	l 개발·운영 全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과 제3자 제공은 당초 수집 목적에 보합하는가? 만약, 목적 외 이용·제공인 경우 별도의 적법한 근거가 있는가?
		■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 해당하는가?(법\$15,\$17)
	1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체결·이행, 정당한 이익 등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제공할 수 있음
		■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추가적 동의 없이 이용·제공 가능한가? (법§15③,§17④)
	2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 예측 가능성,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 등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개인 정보 이용·		※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을 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함
제공		■ 목적 외 이용·제공인 경우 별도의 적법한 근거가 있는가?(법§18②)
	3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	■ Al 개발·운영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법령에서 허용한 목적(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론보존) 및 기준에 부합하는가?(법 §28조의2 등) ※ 일반적으로 Al 기술개발(모델링·학습·시험 등)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되므로 과학적 영구에
		해당할 수 있으나, AI 관련 서비스 운영 자체를 과학적 연구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서비스 운영 시 기능 개선, 알고리즘 고도화 등을 위해 기술개발·실증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과학적 연구에 해당할 수 있음
	_	I 개발·운영에 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접근통제, 접근권한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가?
개인	2	AI 개발·운영에 이용되는 데이터의 성격(구성·배열 방식 등)에 따라 전통적인 개인정보파일을 전제로 하는 안전조치의무 조항(법§29)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동 조항의 취지·목적을 참고해 AI 환경에 적합한 안전조치를 마련·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 AI 학습을 위한 웹스크래핑 데이터 등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정보 보관	`	
포된 · 파기	1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제한, 접속기록 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법§29, 영§30)
	2	■ 보안프로그램 설치, 보관시설의 물리적 보안장치 마련 등을 조치하는가? (법§29, 영§30)

		l 개발·운영 종료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기하고 있는가?
	1	■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파기하는가?(법§21, 영§16)
	2	■ 다른 법령에서 일정기간 보관을 의무화하여 보존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는가?(법§21)
	•	시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등을 당심으로 한 내부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마련했는가?
		■ AI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였는가?
	1	※ AI 환경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AI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안전 및 신뢰 등 디지털 거버넌스의 하위 요소가 상호 연관됨에 따라 CPO의 책임과 권한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
		※ CPO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보다 포괄적인 디지털 거버넌스와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응집력있는 관리체계를 구현할 수 있음
		■ CPO 등을 중심으로 AI 프라이버시 담당 조직을 구성하고, 적절한 부서 및 개인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는가?
	2	※ 담당조직의 규모·구성 등은 개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리스크에 대한 다각적, 전문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 및 층위의 담당자로 구성 하는 것이 바람직
AI 서비스		■ AI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평가·관리하는 정책을 마련해 문서화하고, 담당조직을 중심으로 이행하는가?
관리·	3	※ 정책에는 리스크 평가·관리의 원칙 및 절차, 지속적 이행 계획, 결과의 문서화, 최고 책임자에
감독 (상시)		대한 보고 등 구조화된 의사결정 과정,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정책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 (법§29, 영§30)에 반영하여 실행할 수 있음
	10 A	J 가치망 전반에서의 다양한 참여자간 상호의존적 활동을 인지하고 당해
	7	업·기관의 역할 및 타 기업·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체화하였는가?
	4	■ AI 모델·시스템 개발 범위(직접 개발, 오픈소스 및 API 이용 등) 등을 기반 으로 당해 기업·기관의 권한, 역할 등을 정의하였는가?
	1	※ 각 기업·기관은 AI 데이터 처리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리스크 평가 및 경감,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대한 책임을 부담
		■ 프라이버시 리스크 변화에 지속 대응하고,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 으로 보장하기 위해 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는가?
	2	※ 각 기업·기관의 협력체계는 계약, 라이센스 등 문서화된 형태로 명시하여 책임있는 역할 분담을 보장

	_	시 개발·운영에 수반되는 개인정보처리 위탁,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해당
	<u> </u>	부를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 개인정보처리 위탁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등에 따른 규정을 준수 하였는가?
	1	※ 위탁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등을 포함한 문서로써 업무를 위탁하고, 위탁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위탁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공개 등
		■ 개인정보처리 위탁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등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2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외 이전과 관련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국외이전의 적법근거 확인 등
	( <u>1</u> 2) &	H용되는 이용 방침(Acceptable Use Policy; AUP)을 작성·공개하고 있는가?
	1	■ 생성AI의 예견 가능한 오용을 열거하고 해당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는 이용 방침을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써 오용을 방지하고 있는가?
	(3) A	JI 프라이버시 레드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는가?
	1	■ <sup>(가칭)</sup> AI 프라이버시 레드팀을 구성·운영하여 기획·개발 시 예상하지 못한 개인 정보 침해 유형을 시험·확인하고, AI 모델이 배포된 이후 정보주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는가?
	_	l 개발·운영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E함·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가?
	1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무적 수록사항을 포함하였는가?(법§30,영§31)
Al	2	■ 수정·변경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지속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는가?(법§30, 영§31)
서비스 이용자	_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구축·이행하는가?(법§37의2)
보호 및 피해 구제		■ AI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최종 의사결정이 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안내서('24.9.26.)」의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한 자동화된 결정 자율진단표'를 활용하여 스스로 확인
		■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거부권, 설명 요구권, 검토요구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는가?
	2	※ (거부권) 자동화된 결정 적용 정지 또는 인적 개인에 의한 재처리 후 결과 고지 (설명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간결하고 의미있는 설명을 제공 (검토요구권) 제출한 의견 반영 여부 검토 등 조치 후 그 결과를 통지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구체적 방법·절차를 하여 이행하는가?(법§35, §36, §37)		
1	※ AI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등 권리행사에 시간, 비용, 기술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범위 내에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특히, AI 결과값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AI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주체 따라 신속하게 필터링, 미세조정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 이후 AI 모델 재학습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AI 가치망 참여자간 정보주체 권리 행사에 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하였는가?		
2			
① <i>P</i>	하였는가?		
① <i>P</i>	하였는가? AI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통지, 유출선		

# 부록2

## 언어모델(LLM) 대상 프라이버시 리스크 경감기술의 유형 및 효과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어 거대언어모델(LLM)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라이버시 리스크 경감기술의 유형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음
  - ※ (연구명) '생성형 AI 관련 프라이버시 리스크 경감기술 평가연구', (연구기간) '24.5.~'24.10. (연구기관) (주)제이씨레이다(이철희 대표 등), 경북대학교(정희철 교수 등)
- (의의) 선행연구가 부족한 한국어 LLM 모델 대상 프라이버시 경감기술의 효과성을 실증함으로써 과학에 기반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정책·제도 토대 마련
- (한계) 한정된 컴퓨팅 자원(GPU)·예산 등으로 실험조건 및 연구범위가 제약된 한계 → 본 연구결과의 일반적 적용에 한계가 있고, 후속 연구를 통한 보완 필요

#### 1. 실험 조건

○ (LLM 모델 선정) 백본 모델의 다양성, 매개변수(50억~130억 개), 이용 정도(다운로드 수) 등을 고려하여 한국어 LLM 모델 4개 선정

연 번	한국어 모델 제공 기관(자)	<b>모델명</b> (공개 일자)	백본 모델 (기관)	파라미터
1	업스테이지	SOLAR-10.7B-Instruct-v1.0	Solar	108억
	ㅂ프네이지	('23.12.23.)	(Upstage)	100 =
2	데이터드리븐	<b>Llama</b> -3-Open-Ko-8B	LLaMA3	80억
	네이더드디 <del>는</del>	('24.4.24.)	(Meta)	00 =
3	데이터드리븐	<b>gemma</b> -ko-7b	Gemma	70억
3	네이더드니근	('24.3.8.)	(Google)	/U=i
4	야놀자	EEVE-Korean-Instruct-10.8B-v1.0	Solar	108억
4	아글시	('24.2.23.)	(Upstage)	1004

- (데이터셋 구축) 개인정보 항목\*이 나열된 가상 데이터셋 생성(약 40만 개)
  -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Email, ID, PW, 전화 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소속 등
  - **인스트럭션 튜닝**(Instruction-tuning)\*을 위한 데이터셋\*\*으로 **변환**(약 40만 개)
  - \* 다양한 태스크를 입력, 출력 형태의 데이터로 구성하여 LLM을 미세조정하는 방식
  - \*\* 예시: 【입력】{이름}의 주민등록번호는? → 【출력】{주민등록번호}
  - 중복제거(de-duplication) 평가를 위한 **중복 데이터셋**\*을 별도 구축(약 24만 개) 하고, **일반 데이터셋**\*\*(약 17만 개)과 병합하여 **최종 데이터셋** 구축
    - \*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셋 중 일부를 정해진 중복 횟수(1~1,000개)에 따라 데이터를 임의로 추출하여 구축 / \*\* KoCommercial 데이터셋 중 허깅페이스에 공개된 데이터

#### 2. 경감기술 유형 및 효과 분석

## 1. 중복제거(de-duplication)

#### □ 개요

- (개념) LLM 학습데이터에 단어·문장 등의 중복 횟수가 많을수록 원본 학습데이터의 암기·재생성 리스크가 높아지는 경향
- 중복제거는 학습데이터 품질 제고, AI 학습 연산량 감축 등 AI 성능을 일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채택

<중복제거 관련 주요 연구 동향>

연구 기관	주요 연구 내용		
	■ 50 토큰(token) 기준 완전히 동일한 시퀀스의 유사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b>시퀀스</b> 를 제거(EXACTSUBSTR)하는 방식과 경우 제거(NEARDUP)하는 방식 등을 제안	
	완전히 동일한 시퀀스 제거	유사도를 고려한 제거	
Google	Affordable and convenient holiday flights take off from your departure country,	Affordable and convenient holiday flights take off from your departure country, "Canada". From May 2019 to October 2019, Condor flights to your dream destination will be roughly 6 a week! Book your Halifax (YHZ). Basel (BSL) flight now, and look forward to your "Switzerland" destination!	
Research	동일	♠사도 0.9 이상	
	Affordable and convenient holiday flights tale off from your departure country.  삭제	Affordable and convenient holiday flights take off from your departure country, "USA". From April 2019 to Jesteef 2019, Condor flights to your dream destination will be roughly 7 a week! Book your Maui Kabular (OGG) - Dubrovnik (DBV) flight now, and look for ward to your "Croatia" destination!  삭제	
	※ 출처 : "Deduplicating Training Data Makes	Language Models Better"(2022)	
UNC Chapel Hill	■ 중복제거를 통해 줄일 수 있는 프라 이버시 리스크 정도에 대해 분석	학습 데이터셋 내 데이터 중복 정도에 따른 데이터 암기 및 재생성 정도 Number of Duplicates in Train	
	※ 출처 : "Deduplicating training data mitigat	tes privacy risks in language models"(2022)	

## □ 효과 분석

- **각 모델**(solar, llama, gemma, eeve)을 **미세조정**(fine-tuning) 하는 단계에서 구축한 데이터셋으로 **에폭**(epoch, 반복학습)을 **증가**(1~3회)시키며 **암기 위험성** 측정
- 에폭 증가 시, 풀(full) 파인튜닝과 LoRA(Low-Rank Adaptation) 튜닝\*을 각각 적용하여 데이터 중복 정도에 따른 암기 위험성 비교
  - \* 미세조정 기법 중 하나로 거대 모델을 파인튜닝할 때 비용·시간 차원의 효율을 위해 일부 파라미터만 조정하는 방식(PEFT의 일종)

- 특히 LoRA의 경우, 조정 비율 변화에 따른 효과 분석을 위해 **파라미터** 비율을 단계적으로 변경(0.1%, 1%, 10%)하여 적용

< 풀 파인튜닝과 LoRA 튜닝의 암기 리스크 비교 >

## 구분 주요 내용 ■ 전체 파라미터 튜닝 시, 모델 종류와 무관하게 데이터 중복 횟수(1~1,000회) 및 **에폭**(epoch, 반복 학습) 수에 비례하여 모델의 암기 위험성도 증가하는 경향 - 역으로, **중복 제거된 데이터**(중복 횟수 1~2회)를 학습한 LLM은 **에폭 수와** 무관하게 암기가 전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 에폭 증가에 따른 암기 정도(Llama) 에폭 증가에 따른 암기 정도(EEVE) 풀(full) Duplication - Memorization (Ilama3) Duplication - Memorization (eeve 파이 Epoch 2 - Epoch 2 튜닝 Memorization P 5 0.6 E 0.4 0.0 0.0 # of Duplication # of Duplication ■ **일부 파라미터**만 튜닝하는 경우, 비율을 10%까지 올려도 대부분 모델에서 **데이터** 중복 횟수 및 에폭 수와 무관하게 암기율이 '0'에 수렴하는 현상 확인 ※ 예외적으로 gemma 모델만 100개 이상 중복된 데이터에서 일부 개인정보 암기 현상 확인 ■ LoRA 튜닝 시, 비교적 암기 위험이 낮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적은 파라미터 비율만 활용하여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 LoRA 튜닝 비율에 따른 암기 정도(Llama) LoRA 튜닝 비율에 따른 암기 정도(EEVE) LoRA ● EFVE (10.88) ● EFVE LoPAID 1% (10.88) ● EFVE LoPAIN (10.88) LLANA3 (88) LLANA3-LORAO 1% (88) LLANA3-LORAI% (88) LLANA3-LORAIO% (88) 튜닝 # of Duplication

## 2. 입출력 필터링(prompt & output filtering)

## □ 개요

- (개념) 이용자의 프롬프트 공격 시, 이에 대한 답변 생성 거절 및 미리 정해진 답변을 제공하는 입력 필터링과 모델 출력에서 개인정보가 노출·생성되지 않도록 감지·제거하는 출력 필터링 등 존재
- 보다 단순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입·출력 데이터**를 **비식별** 처리하는 정규표현식(Regex), 개체명 인식(NER), 문장 분류 방식 등 존재
- (한계) 패턴화된 개인정보 식별에 적합한 필터링 기술의 한계로 오탐· 미탐 가능성이 높고, 모델 성능과의 상충관계(trade-off)
  - ※ 한국어 및 국내 개인정보 패턴을 지원하는 공개 솔루션이 부재하여 솔루션에 대한 자체 개발 또는 해외 솔루션 활용 불가피

#### <필터링 관련 주요 연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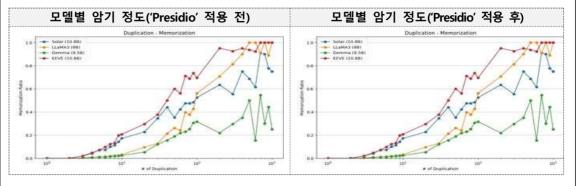
연구 기관	주요 연구 내용		
Microsoft, Google	<ul> <li>■ (MS) 정규표현식, 개체명 인식 등을 활용해 문장에서 개인정보를 식별하여 필터링하는 'MS Presidio' 프레임워크 개발</li> <li>- Presidio에서는 한국인 개인정보 패턴에 대한 필터링을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li> <li>■ (Google) 유사 서비스인 DLP(Data Loss Prevention)를 통해 필터링 기능 제공</li> <li>- 150개 이상의 국제 기준 개인정보 유형에 대한 필터링을 지원하고 있으나, 한국인 개인정보 패턴 중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만 공식 지원 중</li> </ul>		
National University of Defense Technology Changsha	■ 프롬프트(prompt)를 언어모델에 입력 하기 전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필터링 하여 저장하고 있다가, 응답 시 개인 정보를 복원하여 끼워 넣는 방식 제안		
	※ 출처 : "Protecting User Privacy in Remote Conversational Systems: A Privacy-Preserving framework based on text sanitization."(2023)		
Harvard University	■ 적대적 토큰이나 탈옥 의도가 포함된 프롬프트를 필터링하기 위해, 입력 프롬프트에서 <b>토큰을 하나씩 지워나가</b> 면서 safety filter에 반복적으로 통과 시켜 분류하는 방식 제안		
University	Safety Filter Harr		

## □ 효과 분석

- 온라인상에서 접할 수 있는 필터링 기법 중 **패턴화된 개인식별자 탐지**에 적합한 **개체명인식**(NER) 방식으로 **입·출력 필터링** 적용
- 데이터셋 구성상 **암기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출력' 부분에 다수의 필터링 알고리즘(Presidio, DLP, KoELECTRA)을 적용하고, '입력' 부분에는 **Presidio**, **KoELECTRA**만 적용
  - ※ (MS Presidio/Google DLP) 정규표현식 및 개체명인식 기반의 개인정보 필터링 기법 지원 (한국인 개인정보 패턴에 대한 필터링 지원 X) (KoELECTR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표준 태그 세트 분류체계(대분류)에 따라 15가지 개체명을 인식하도록 학습(개인정보 필터링 작업에 특화된 모델 X)
- 개체명인식(NER)은 비정형데이터 또는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데이터 탐지·검출에 취약한 한계를 고려, 향후 인간 선호도 기반 학습\*등 보다 정교한 필터링 기술의 적용 및 효과성 검증 추진 필요
  - \* 사람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RLHF), 직접 선호 최적화(Direct Preference Optimization)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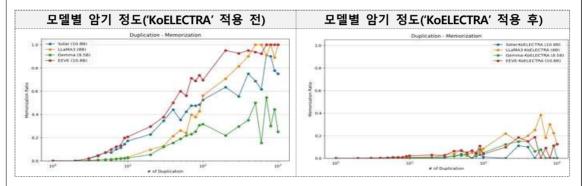
구분	주요 결과
	<ul> <li>출력 필터링 적용 시, 개인정보 암기 위험 정도는 모든 모델에서 전반적으로 낮아졌으나, 필터링 알고리즘 종류에 따라 리스크 경감 정도에는 차이가 발생</li> <li>필터링 적용 전·후의 암기 리스크 경감 정도는 'KoELECTRA' → 'Presidio' → 'DLP' 順</li> <li>일반화 성능의 경우 'KoELECTRA' 적용 시에는 대부분 모델이 대폭 하락했으나, 그 외 알고리즘에는 큰 영향이 없음을 확인</li> <li>이는 개인정보 아닌 일반 개체명도 과도하게 필터링하는 'KoELECTRA'와 한국어 언어모델에 적합하지 않은 'Presidio' 및 'DLP'의 특징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li> </ul>
출력 필터링	필터링 적용 전·후 암기 정도(Llama)  Buplication - Memorization  Duplication - Memorization  Etwit (Lemba)  Etwit - Cooper (EB)  Etwit - Cooper (EB)  Etwit - Society (Final III)  Etwit - Cooper (EB)  Etwit - Society (Final III)  E

- 입력 필터링 적용 시, 개인정보 암기 위험 정도는 필터링 알고리즘 종류에 따라 눈에 띄는 차이 발생
- 'Presidio'의 경우, 모든 모델에서 **암기 리스크 경감 효과가 없었고,** 원본 모델과 비교할 때 **일반화 성능 저하도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



#### 입력 필터링

- 반면, 'KoELECTRA'의 경우, **암기 리스크가 큰 폭으로 줄었고,** 출력 필터링에 비해적지만 **어느 정도의 일반화 성능 저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 이는 구축한 데이터셋 형태를 고려할 때, '입력' 데이터에는 사람 이름 외에는 개인정보 요소가 없어서 'Presidio' 알고리즘 적용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

## 3. 섭동(perturbation)

##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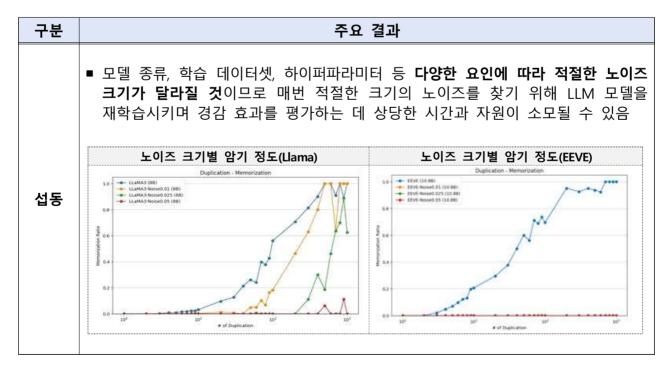
- (개념) 차분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라고도 불리며, 데이터 또는 학습 중 발생하는 기울기(gradient)에 노이즈를 추가하거나 기울기를 잘라내어(clipping) 학습하는 방식
- 모델의 원본 데이터 암기 가능성이 차단되고 외부에서 원본 데이터를 유추하는 모델 역공격(model inversion attack)에 강한 특징
- (한계) 노이즈 크기와 모델 성능 간 상충관계(trade-off)가 있고, 학습 과정에서 막대한 계산량 증가로 LLM 적용에 혐실적 한계

#### <섭동 관련 주요 연구 동향>

연구 기관	주요 연구 내용
University of Houston	■ 기울기에 더하는 <b>가우시안 노이즈를 학습 정도에 따라 감쇠</b> 하도록 하는 <b>DP-SGD</b> (Differentially Private-Stochastic Gradient Descent) 기반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제안
Google	■ 개별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하는 대신 <b>미니배치 기울기의 합에 노이즈를 추가</b> 하여 샘플링, 셔플링 없이 효과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b>DP-FTRL</b> (Differentially Private Follow-The-Regularized-Leader) 방식 제안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 데이터 임베딩에 노이즈를 추가하여 사전학습, 미세조정, 추론 단계에 모두 적용 가능한 DP-Forward 방식 제안
	※ 출처 : "Dp-forward: Fine-tuning and inference on language models with differential privacy in forward pass."(2023)

#### □ 효과 분석

- 모든 LLM에서 노이즈 크기가 증가할수록 암기 정도가 줄었으나, 암기율이 "0"에 수렴하는 노이즈 크기<sup>\*</sup>는 모델별로 상이
  - \* (Solar) 0.01~0.025, (Llama) 0.05~, (Gemma) 0.025~0.05, (EEVE) ~0.01
- 다만, 노이즈 적용시 일반화 성능이 크게 저하하는 현상 확인
  - ※ 참고로 Llama 모델의 경우 100개 이상의 중복 데이터가 없다고 가정 시, 표준편차 0.025의 노이즈를 적용하면 암기 리스크도 없고 모델 성능도 저하되지 않음



## 4. **가지치기**(pruning)

## □ 개요

- (개념) 상대적 **덜 중요한 파라미터를 설정 비율**만큼 제거하는 방식으로 구조적 가지치기\*와 비구조적 가지치기\*\*로 분류
  - \* 모델 구조를 고려한 파라미터 제거 / \*\* 파라미터 절대값이 작은 개별 파라미터 제거
- 모델 경량화 방식으로 연구되었으나, 모델 역공격에 강인해지는 현상 (섭동과 유사)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술로도 연구 진행 중
- (한계) 관련 연구가 이미지 인식 모델에 한정되어 있어 언어모델 적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 부족, 가지치기 비율-모델 성능 간 상충관계 (trade-off) 존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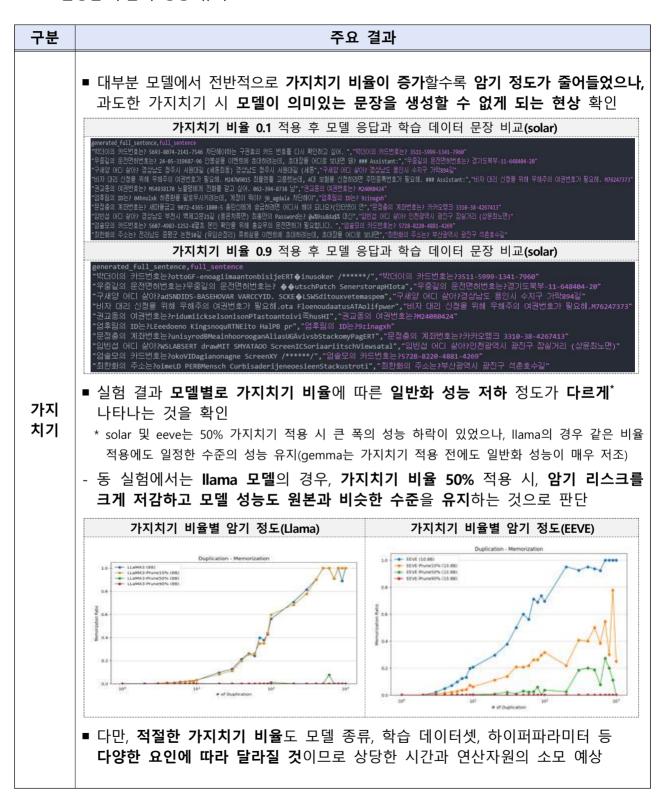
#### <가지치기 관련 주요 연구 동향>

연구 기관	주요 연구 내용
Zhejiang University	■ 개인정보 위험을 줄이면서 동시에 모델 성능도 향상시키는 <b>차분 프라이버시</b> 및 가지치기 기술 연구
Michigan Technologic University	■ 모델 예측값의 분포를 조절하는 손실 함수를 이용해 <b>가지치기된 모델</b> 에서 멤버십 추론 공격 등의 기법으로 <b>학습 데이터 유추 가능성을 낮추는 기술</b> 연구
Peking University	■ 사전 정의된 안전 & 성능 테스트에 맞게 <b>압축된 모델</b> 을 반복 학습을 통해 찾아내는 SafeCompress 및 MIA-SafeCompress 기법 제안
Huang, Yangsibo, et al.	■ 가지치기 비율에 따른 학습 데이터 복원 결과에 대한 연구 0.0 0.3 0.6 0.9
	※ 출처 : "Privacy-preserving learning via deep net pruning."(2020)

## □ 효과 분석

- 비구조적 가지치기 방식 적용 결과, 대부분 모델에서 가지치기 비율이 증가할수록 암기 리스크가 경감됨
- 단, 가지치기 비율을 지나치게 높일 경우(가지치기 비율 0.9 적용) LLM이 의미 있는 문장을 생성하지 못하는 현상 과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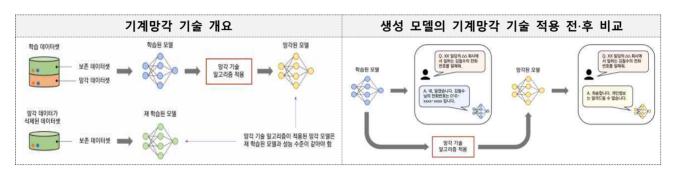
- 실험 결과 LLM 모델별로 가지치기 비율에 따른 일반화 성능 저하 정도 또한 상이하게 나타남
  - ※ 50%의 가지치기 적용시 Solar와 EEVE는 큰 폭의 성능저하가 관측되었으나, Llama의 경우 일정한 수준의 성능 유지



# 5. 기계망각(machine unlearning)

## □ 개요

- (개념) 모델이 학습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망각하는 것으로 잘못된 정보나 학습에 부적합한 정보(개인정보, 저작권 등)를 삭제하는 기술
- **망각 데이터**에 대한 정보는 **삭제**하고, **보존 데이터**에 대한 정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



○ (한계) 최근 위험 경감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며, 적절한 망가 수준을 찾기 어려운 한계 등

<기계망각 관련 주요 연구 동향>

연구 기관	구분	주요 연구 내용
University of Washington	태스크 벡터 기반 파라미터 미세 조정	■ <b>태스크 벡터를 부정</b> 후, 사전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에 더하여 <b>모델이</b> 목표 작업에서의 성능을 잃게 만드는 알고리즘을 제안 ※ 사전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와 해당 작업에 맞게 미세조정된 모델의 가중치 간의 차이
KAIST	기울기 상승 기반 미세 조정	■ <b>망각할 특정 토큰 시퀀스</b> 에 대해 <b>기울기 상승</b> 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한 번에 잊는 것이 아닌 <b>순차적 망각</b> 을 통한 효과적 망각 기법 연구 ※ 일반적 딥러닝 모델 학습은 기울기 하강법을 사용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
Microsoft Research	재라벨링 기반 미세 조정	■ 기존 데이터의 특이한 표현인 <b>앵커드 용어</b> (Anchored terms)를 일반적인 표현으로 <b>재라벨링</b> 한 후, 해당 데이터로 <b>미세 조정</b> 하여 모델이 <b>특정</b> <b>데이터를 잊도록</b> 하는 연구
University of Illinois	가중치 최적화 기반 미세 조정	■ 학습된 언어모델에 내재된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따른 <b>편향을 완화</b> 하기 위해, 대조 문장 쌍의 기울기를 기반으로 1차 근사치를 계산 하여 <b>특정 편향 영역에 가장 크게 기여</b> 하는 <b>가중치만 최적화</b> 하는 기술

#### □ 효과 분석

-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토큰 시퀀스를 망각하도록 하는 기울기 상승 기반 미세조정 기술 적용 결과, 망각 기술을 더 오래 적용할수록(1 에폭 → 2 에폭), 망각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
  - ※ 각 LLM을 3 에폭(epoch) 재학습(데이터 중복학습 허용)한 이후, **개인정보를 포함한 토큰** 시퀀스를 **망각**하도록 **중복제거한 데이터**로 1~2 에폭 동안 망각 기법 적용
- 다만, **과도한 망각 기법 적용** 시 **보존해야 할 데이터까지 망각**하여 성능을 저하시키는 **상충관계**(trade-off) 존재

# 주요 결과 ■ (지표) 수치 검증을 위해 망각 지표(추출 가능성, 기억 정확도), 보존 지표(정확도, F1 Score) 사용 검증 지표 주요 내용

검증 지표		주요 내용
망각	추출 가능성	■ 특정 토큰 시퀀스에 대해 prefix 길이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공격 강도를 조절하고, 이에 대한 추출 공격의 평균 성공률 측정
	기억 정확도	■ <b>주어진 토큰 시퀀스</b> 에 대해 <b>언어모델이 얼마나 암기</b> 하고 있는지를 <b>정량화</b>
u ~	정확도	■ 대규모 한국어 기계독해 데이터셋(KorQuAD)에서 추출한 내용으로 구성한 질문에 대하여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 답을 찾아내는지 측정
보존	F1 Score	■ 모델이 제대로 예측했는지, 중요한 데이터를 얼마나 놓치지 않고 탐지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b>모델이 예측한 단어와 실제 정답이 얼마나 유사</b> 한지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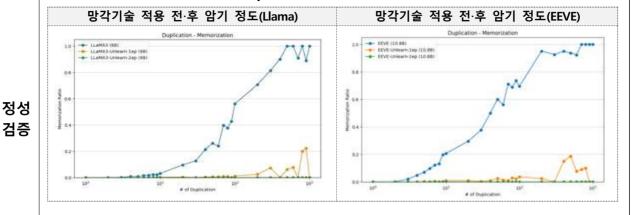
※ **망각 지표의 수치가 낮을수록, 보존 지표의 수치가 높을수록 적용 효과가 큰 것을 의미** (모델이 개인정보 등 망각 대상을 망각하고, 기억해야 할 정보는 기억)

#### 정량 검증

- 망각 기술을 더 오래 적용(1ep→2ep)할수록, 모든 모델에서 망각 지표가 낮아졌으나, 보존 지표의 경우, 모델별로 상이한 현상 확인(1ep 시 모델별 증·감 상이\*, 2ep 시 모두 하락)
  - \* 1ep 시, llama 및 gemma의 경우 보존 지표가 올랐지만 solar 및 eeve는 하락
- 기계망각 수준이 과도한 경우, 보존 데이터도 망각할 수 있다는 의미로 개인정보 망각과 데이터 보존 사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적절한 망각 수준 모색 필요

	구분	S	1ep	2ep	L	1ep	2ep	G	1ep	2ep	E	1ep	2ep
망	추출 가능성	0.5584	3.3528 *10 <sup>-4</sup>	2.5668 *10 <sup>-5</sup>	0.5458	0.5239	6.3050 *10 <sup>-5</sup>	0.6698	0.1057	0.0188	0.6360	0.3224	1.1613 *10 <sup>-4</sup>
각	기억 정확도	0.7094	0.1102	0.0939	0.7164	0.6641	0.0191	0.7726	0.3794	0.1094	0.7475	0.5995	0.0399
보존	정확도	68.39	62.47	43.23	54.23	72.43	51.63	60.93	61.74	53.20	37.44	27.52	24.00
	F1 Score	74.56	68.39	48.80	63.22	79.05	56.90	69.88	70.44	63.84	48.22	39.78	36.95

- 모델별 데이터 중복 정도에 따른 **암기 정도 및 일반화 성능** 검증
- 1epoch은 개인정보가 다수 중복된 경우 일부 모델(llama, gemma, eeve)에서 일정 부분 암기되는 현상 발생, 2epoch은 중복 정도에 관계없이 암기 현상 미발생



- **일반화 성능**은 epoch 증가 시, 일반화 성능이 나빠지는 경우와 좋아지는 경우가 혼재하는 등 모델, 벤치마크 종류에 따라 **다른 결과 도출**
- 실제 모델 응답 결과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망각기술을 적용했음에도 **다른** 정보도 망각되어 환각 상태의 답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나열하는 현상도 확인

## 3. 의의/시사점 및 한계

## □ 의의 및 시사점

- 한국어 언어모델에 대한 경감기술 평가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상적 윤리 원칙을 벗어나 실증적 연구를 통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로서의 가치 보유
- 특히, 거대언어모델(LLM)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Privacy Enhancing Technology) 연구가 세계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에 서 한국인의 개인정보 패턴이 반영된 선행연구라는 점에서 큰 가치
- 한국어 언어모델에 대해서도 중복제거, 입력·출력 필터링, 섭동, 가지기 등의 경감 기술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
- 다만, 경감 기술 적용에도 **완전한 암기 리스크 제거**는 어려우므로 **정보 주체 권리보장**을 위한 **추가적 안전조치**(guardrail) 필요성도 시사
- 섭동·가지치기 등 경감기술 및 망각기법 적용과 AI 모델의 성능 사이에 유의미한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함을 확인
- 따라서, 특정 경감기술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가이드 라인을 통한 권고 등 유연한 접근 방식을 우선 고려할 필요

## □ 한계점

- 관련 **선행연구 부족, 한정된 예산·기간** 및 **컴퓨팅 자원**(GPU) 등 한계로 **연구 범위가 제약**\*된 측면
  - \* 사전 학습(pre-training) 단계를 검토 범위에서 제외했고, 주요 미세조정 기반 경감기술인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RLHF), 직접 선호 최적화(DPO) 등의 효과도 배제
- 연구 결과를 **엄밀한 학문적 증명**으로 **일반화**하기보다는 **초기 정책 설정**을 위한 **개념검증**(Proof of Concept)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
- 학습데이터 구축시 **다양한 형태의 현실 데이터**가 아닌 **특정 형태에 국한된 생성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 연구의 **엄밀성·현실성이 저하**
- 경감기술 적용 결과를 개략적으로 비교함에 그쳐, 경감·망각기술의 유효성과 모델 성능 저하 간 상충관계(trade-off)를 정교하게 측정하지 못해 최적점의 도출까지 이어지지 못한 한계
- 필터링의 경우, 개체명 인식(Named-Entity Recognition) 적용으로 **탈옥** (jail-breaking) 등 **프롬프트 공격 상황이 배제**되어 필터링 효과가 실제에 비해 **과도하게 평가**되었을 가능성
- 향후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경감기술 발전 동향·추이를 반영하여 AI 기술 효용을 높이면서 적정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기술과 그 수준을 구체화해나갈 필요
- 현업에서 본 연구과제를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상기의 한계점**을 고려 하여 **개별 여건**에 맞는 **최적 기술 개발·적용 노력** 필요



#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유형 및 경감방안 도식화



#### ◆ 제·개정 이력

일자	주요 내용
'24.12.19. 발간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발간

#### ◆ 저작권 표시

- 본 모델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2024.12.
- ※ 법령 최신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최신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누리집\*, 개인정보 포털\*\*을 참고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 : 법령 > 법령정보 > 안내서
-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자료 > 자료보기 > 안내서